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이 책자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본 책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4
•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5
•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6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7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8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9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11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관세청)	13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위원회)	14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15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16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금융위원회)	17
• 햇살론17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19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20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21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	22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위원회)	23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금융위원회)	2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2 교육·보육·가족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교육부)	27
•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부)	29
•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교육부)	30
•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 (교육부)	31
•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교육부)	32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33
•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교육부)	34
•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교육부)	35
•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여성가족부)	36

03 보건·복지·고용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보건복지부)	41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42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43
•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4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4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46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의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47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48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49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무주택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50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51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고용노동부)	52
• 재난 발생시 필수업종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53
• 부당하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고용노동부)	5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고용노동부)	55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56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57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58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59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고용노동부)	60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61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62
•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여성가족부)	63
•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64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66
•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67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질병관리청)	68

04 문화·체육·관광

•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71
•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문화재청)	72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문화재청)	73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문화재청)	7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5 환경·기상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환경부)	77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78
•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	79
•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부)	80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환경부)	81
•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환경부)	82
•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환경부)	83
•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기상청)	84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
•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
•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
•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94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95
•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96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97
•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98
•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기업법인 근로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99
• 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100
•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특허청)	101
•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특허청)	102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특허청)	103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방송통신위원회)	104

07 국토·교통

-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107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108
-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 109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이 시작 (국토교통부) 110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 111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국토교통부) 112

08 농림·수산·식품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15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6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17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8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9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0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1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해양수산부) 122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해양수산부) 123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24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수산 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 (해양수산부) 125
-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양수산부) 126
-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점정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127
-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28
-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해양수산부) 12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9 국방·병무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국방부)	133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국방부)	134
•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국방부)	135
•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국방부)	136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병무청)	137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138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병무청)	139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140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병무청)	141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병무청)	142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143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병무청)	144
•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병무청)	145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역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병무청)	146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병무청)	147
•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방위사업청)	148
•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149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150
•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제 이력 감점항목 삭제 (방위사업청)	151

10 행정·안전·질서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법무부)	160
•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법무부)	161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법무부)	162
•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법무부)	163
•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	164
•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법무부)	165
• 피해자 국선번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법무부)	166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법무부)	167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168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170
·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행정안전부)	172
·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행정안전부)	173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행정안전부)	174
·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175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176
·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여성가족부)	177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네이버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178
·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여성가족부)	179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여성가족부)	180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181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법제처)	182
·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법제처)	183
·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법제처)	184
·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조달청)	185
·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조달청)	186
·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조달청)	187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경찰청)	188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경찰청)	189
· 수난구조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해양경찰청)	190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191
·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192
· 대규모무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93
·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194
·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195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196
·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197
·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198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99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200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
· 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4
•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5
•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6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7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27
•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29
•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30
•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	31
•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32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33
•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34
•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88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8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90
•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91
•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92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93

법무부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법무부)	160
•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161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162
•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163
•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164
•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16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166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167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국방부)	133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134
•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135
•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136



행정안전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	8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9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68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170
•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172
•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173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174
•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175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176

문화체육관광부

•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71
---------------------------------------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115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116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117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118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119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120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21

산업통상자원부

•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94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95
•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96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97
•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98

보건복지부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41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42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43
•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44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45

환경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77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78
•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79
•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80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81
•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82
•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8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46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47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48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49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50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51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52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53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5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55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56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57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58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59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60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61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62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36
•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63
•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177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네이버에서 확인	178
•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179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180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181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107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108
•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됩니다.	109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이 시작	110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111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112

해양수산부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122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23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124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수산 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	125
•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126
•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127
•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128
•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129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99
• 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	100



법제처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182
-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183
-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184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64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66
-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67

국세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11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13

조달청

-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185
-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186
-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187

병무청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137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138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139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140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141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142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143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144
•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145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원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146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147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148
•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149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150
•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151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188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189

문화재청

•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72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73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74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101
-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102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103

질병관리청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68

기상청

-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84

해양경찰청

- 수난구조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190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191
-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192
-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193
-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194
-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195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196
-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197

금융위원회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14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15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16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17
• 햇살론17 금리 인하	19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1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22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23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24

국민권익위원회

•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198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199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200

방송통신위원회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104
---------------------------	-----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201
• 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	202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203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7월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4
• 소액수외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5
•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6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7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11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관세청)	13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위원회)	14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15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16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금융위원회)	17
• 햇살론17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19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21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	22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위원회)	23
•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교육부)	32
•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교육부)	34
•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46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47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48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50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51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고용노동부)	52
• 소방·교육(초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57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58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고용노동부)	60
•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64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환경부)	81
•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환경부)	82
•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환경부)	83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방송통신위원회)	104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108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	111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국토교통부)	112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수산 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 (해양수산부)	125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138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병무청)	141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143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병무청)	146
•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150
•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방위사업청)	151
•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법무부)	161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170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네이버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178
•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여성가족부)	179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여성가족부)	180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181
•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조달청)	185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경찰청)	189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8월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43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6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9
• 병무청 입영편정검사 제도 시행 (병무청)	137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병무청)	144
•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법제처)	183



9월

•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교육부)	30
• 국립대학의 옹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교육부)	35
•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여성가족부)	36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보건복지부)	41
•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128
•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여성가족부)	177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법제처)	182

10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고용노동부)	55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56
•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여성가족부)	63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66
•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부)	80
• 국제동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
•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94
•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99
•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특허청)	102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특허청)	103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17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1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해양수산부)	123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국방부)	133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국방부)	134

-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국방부) 135
-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국방부) 136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병무청) 139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140
-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병무청) 145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병무청) 147
-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행정안전부) 173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경찰청) 188
- 수난구조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해양경찰청) 190
-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93
-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194
-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198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199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200

11월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49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53
- 부당하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고용노동부) 54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59
-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 109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191
-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192
- 가맹정보 전문가 풀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2월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환경부)	77
•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
•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
•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해양수산부)	129
•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행정안전부)	172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행정안전부)	174
•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법제처)	184

기 타 : 2021년 기 시행중 또는 시행 예정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8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9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20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금융위원회)	24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교육부)	27
•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부)	29
•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 (교육부)	31
•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33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42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45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61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62
•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67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질병관리청)	68

•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71
•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문화재청)	72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문화재청)	73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문화재청)	74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78
•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	79
•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기상청)	84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95
•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96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97
•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98
• 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100
•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특허청)	101
•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107
•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이 시작 (국토교통부)	110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15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8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0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해양수산부)	122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24
•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양수산부)	126
•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127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병무청)	142
•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방위사업청)	148
•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149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법무부)	160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법무부)	162
•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법무부)	163
•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	164
•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법무부)	16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법무부)	166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법무부)	167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168
•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175

<http://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176
-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조달청) 186
-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조달청) 187
-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195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196
-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19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문화·체육·관광
 - 05 환경·기상
 -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7 국토·교통
 - 08 농림·수산·식품
 - 09 국방·병무
 - 10 행정·안전·질서

01

금융·재정·조세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8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21년 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이후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추진하였습니다.

과표	표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6~1.5억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1.5~3억 (공시 1억~2.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 (공시 5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After

'21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과표	특례 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05%
0.6~1.5억 (공시 1억~2.5억)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3억 (공시 2.5억~5억)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3~3.6억 (공시 6~6억)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2 국세청

자세한 내용은 p.10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으로 기부문화의 투명성이 저해되었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4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일 : 2021년 7월 7일

Before

'18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 적용하였습니다.



24%
금리

After

'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 적용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0%
금리

4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5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하여 금융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조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① 우대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② 주택기준 우대수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① LTV	50%	60%
② DTI	50%	60%
③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After

'21년 5월부터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구분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조건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9억 미만	
① 주택기준 우대수준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 LTV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 DTI	60%	60%
③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1.3.1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소액수익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3)

수익계약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익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1억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1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21.5.13.)

소액 수익계약 기준금액 2배 상향

-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 **주요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1억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1억
- **시행일** 2021년 7월초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3)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 입찰보증요율: 0.03%) 대비 약20~30% 낮은 보증수수료
-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21.4.16.)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 **주요내용**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 **시행일** 2021년 7월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 (☎ 044-215-5643)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 ③계약해제·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원, 전문공사 3 → 1억원, 물품·용역 1.5 → 0.5억원 등)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3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 ▶ 금액기준 :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용역) 1.5억→ 0.5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044-205-3840)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9월 부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2)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 **주요내용**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044-204-3918)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¹⁾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²⁾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 (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¹⁾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²⁾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가산세 규정 통합·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35)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 ※ 등록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참고 관세청홈페이지(행정예고)「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 **추진배경**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 **주요내용**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4)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863)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 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②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4.1.), ③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참고

금융위원회·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20%)

-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 시행일 2021년 7월 7일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 2824)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4억원 한도 이내)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1.5.3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 추진배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DTI*	50%	60%	60%	
③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적용 차주는 DSR 적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 2824)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를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21.4.29.)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주요내용**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현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①/② 유지)	(①/② 폐지)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23)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예)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은(30년만기) 124만원
→ (40년만기) 105.6만원으로 14.8% 감소
-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2021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
-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감소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2만원으로 감소
-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됩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보급자리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급자리론을 통해 더 폭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급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비용 경감방안

- **추진배경**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보급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 ③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 ④ 보급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 **시행일**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햇살론17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4)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p 낮아집니다.

-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합니다.

	3년 만기대출 금리(%)			5년 만기대출 금리(%)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현행	17.9	15.4	12.9	17.9	16.9	15.9	14.9	13.9
개선	15.9	12.9	9.9	15.9	14.4	12.9	11.4	9.9

- 해당 내용은 7월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방안('21.3.31.)

햇살론15 개요

- 주요내용**
 - 대상자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심사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 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시행일** 2021년 7월 7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02-2100-2593)

2021년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예정입니다.
-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행정지도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됩니다.

- ▣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보도자료('21.6.1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02-2100-2911)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 7.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88-0037)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21.6.1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 **주요내용**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92)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자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i) "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1.5.12.)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 "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 02-2100-2531, 2859)

2021년 7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 또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4.13.)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종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9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 서비스에 대리접속하여 로그인 후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규격으로 데이터 접근권한·범위 통제가능

※ (예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서비스 예시

- ① 대출금리비교, 카드해택 비교 등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
- ② 고객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21.1.27.)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 시행

-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 **주요내용**
 - 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 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02

교육·보육·가족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27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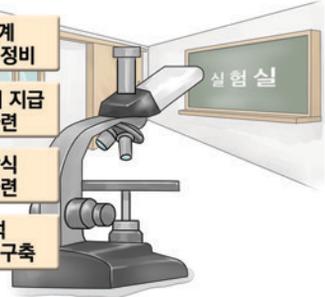
지금까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체계적 세분화가 미흡하였습니다.



After

'21년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안전 그리고 내실화에 힘 쓰겠습니다.

- 분류체계
공시제도 정비
-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마련
- 지원 방식
기준 마련
-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6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Before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After

초중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 사전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044-203-6880)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 직위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합니다.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가입합니다.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합니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을 내실화합니다.

- 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합니다.
-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를 합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제도보완 요구
- 주요내용
 -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분류체계 및 공시제도 정비
 - ②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마련
 - ③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 및 기준 마련
 - ④ 대학생 현장실습의 자율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357)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학교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2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2.3.)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추진배경**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 정립
-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940)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지며,
- 만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2.26.)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 **추진배경**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사립학교 등이 이행하지 않아 교원 권익구제에 한계
- **주요내용**
 -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제출 의무
 -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

교육부 학원정책팀 (☎ 044-203-6380)

앞으로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5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공이용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① 원칙, ②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학원 시설평면도, ④ 이사회회의록, ⑤ 시설사용증명서류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 추진배경 학원 설립·변경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일부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등 서류 제출 간소화 필요
- 주요내용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전기안전 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시행일 2021년 하반기(예정)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 044-203-7135)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교육시설법」 시행(‘20.12.4.) 이후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21.6월 말)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자·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21.5.12.)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안전인증제 등 안전제도 실시

- **추진배경** 학교 안전 위해요인의 사전 파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주요내용
 -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3,865개동
 - 인증 등급/주기 : 최우수 10년 주기, 우수 5년 주기
 - 심사기준 :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 심사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주요내용
 - 평가 대상 : 학교 내 공사, 학교 밖(4m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 평가 항목 :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및 통학로의 안전성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86)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방송사와 함께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석학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강좌 및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교육으로만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심화 강좌(K-MOOC+)를 시범 도입합니다.
- ▣ 글로벌 우수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 추진배경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 K-MOOC 추진
- 주요내용 마스터클래스,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등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강좌 제공
- 시행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1월) → 신규강좌 선정결과 발표(4월)
→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강좌 제공(하반기)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교육부 이력닝과 (☎ 044-203-64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 국민 대상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송통신대법)」제정(2021.1.12. 공포, 2021.7.13. 시행)하였습니다.

-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홍보마당(홍보자료) 시행령 제정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법령>방송통신대법시행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추진배경** 고등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 역할 강화를 위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 044-203-6867)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본회의 통과('21.2.26.)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 **추진배경**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2)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됩니다.

- ▣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지원체계에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 **추진배경**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신속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원 추진
-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무교육 대상(초·중)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년 220개소 운영)로 정보를 연계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03

보건·복지·고용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12개 직종



2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7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만 적용제외 허용

5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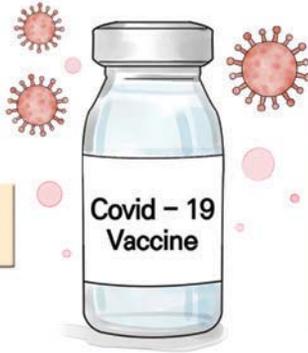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64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 코로나19 백신 플랫폼별 검정 시험장비 추가 · 신규 도입



품질관리

인프라구축

특수실험실
건축

6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66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썬(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 02-6261-2883)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 개통에 해당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1.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1.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차세대 구축사업 보도자료('19.4)

맞춤형 급여안내 도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주요내용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시행일 관련 기능 2021년 9월 개통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 044-202-3632)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합니다.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주요 변경 내용

- **추진배경**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 강화로 국민의 신뢰 확보
- **주요내용**
 - (지급대상 확대)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 (현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 (추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급~3급)수급권자
 - (지금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
 -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19.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여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은 7월에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참여기관 모집 공고 및 시범사업 시행일 별도 안내 예정
-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1.1.29.)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추진배경 거동불편 환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대상기관) 한의원 대상,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대상자) 진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진찰, 처방, 침술·뜸·부항 등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 시행일 2021년 8월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1)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 시범사업을 통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여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21.5.17.)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 **추진배경**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 **주요내용**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목적) ①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②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 도모,
③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주요 심사지표)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
- **시행일** 2021년 12월 4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3)

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2개소(국가,영남권) → (변경) 5개소(국가,영남권 + 호남권,충청권,강원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추진배경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심리지원 제공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개정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고 고용보험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3, 7705)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7.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추진배경**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3, 7545)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주요내용**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13)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1.4.30.)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도입

- 추진배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 **주요내용**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396)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개정내용
노동조합 가입 자격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검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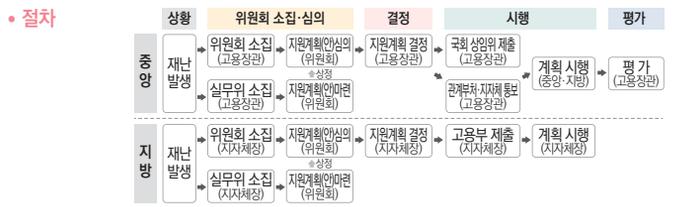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 고용노동부에 재난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1.4.30.)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 정의
 - (필수업무)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4)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1.4.30.)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강화

- **추진배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요내용**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39)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추진배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2)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주요내용**
 -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507)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4)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기시행

▣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마우로 230	031-364-7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052-228-5840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054-459-1150	대구, 경북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1-690-1660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063-839-5260	전북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041-661-5841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043-870-5960	충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추진배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6)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추진배경**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 ①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 ②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 ③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21.6.1.)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추진배경**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 **주요내용**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 ②재검사 실시 요건 축소,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시행일** 2021년 6월 8일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7, 6308)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기숙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기회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대구 달성군)를 건립(17~21년)하여 '21년 하반기 개원합니다.

- ▣ 그동안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은 경기도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유일했으나,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우울, 불안, 반항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 ▣ 대구시 달성군에 1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중앙과 지역센터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거주하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국립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개원

- 추진배경
 -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접근성 및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만9세~18세)
 - (지원내용) 치료·보호·교육·자립의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및 성장 지원
 - (시설현황)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 주요시설 :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 입소인원 : 청소년 총 72명(장기과정 48명, 단기과정 24명)
- 시행일 2021년 10월 개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 043-719-5468)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하여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밀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하여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신기술 플랫폼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백신 개발사의 품질관리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 및 신종 감염병 검정시험 전용 특수실험실 구축으로 검정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 구축을 위해 '21년 10월 특수시험검정동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에 착수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강화하여 첨단 신기술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및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백신의 신속 공급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가속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백신 개발부터 허가 후 출하까지 전주기 품질관리 밀착 지원
 - 집단면역 조기 형성을 위하여 국가출하 신속 승인 및 인프라 지원 필요

- 주요내용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 플랫폼별/품목별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시험법 등 개발·검증 및 표준품 제조·확립 지원
- 플랫폼별 백신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양식 등 가이드라인 개발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및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 플랫폼별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 특수실험실 건축
 -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군 신종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기 위한 특수실험실 건축
 - * 코로나19 백신 플랫폼별 검정 시험장비 추가·신규 도입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62)

올해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21) 수입량 10,000톤 이상 → ('22) 5,000톤 이상 → ('23) 1,000톤 이상 → ('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식약처는 의무 적용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해썹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하며,
- 또한 그 동안 국내식품 해썹 인증업무를 지속 수행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추진배경**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 의무화 되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필요
- **주요내용**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
- **시행일** 2021년 10월 1일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61)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구호용, 자가사용용 등의 의료기기를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오프라인 방문 등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21년 4분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연계를 통한 전산화된 환경을 구축하여 상시 신청접수 및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민원인은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과 수입통관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오프라인 방문 등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구호용, 자가사용용,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접수·승인처리를 위한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면서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 **시행일** 2021년 4분기 중 시행 예정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044-215-7136)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보도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감염병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추진배경**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내용**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시행일** 2021년 5월 11일

04

문화·체육·관광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자세한 내용은 p.71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Before

그동안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21년 4월 1일부터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18)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예술 활동 증명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
- ▣ 기존에는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 ▣ 그러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보도자료 (21.4.1.)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호가 감소한 상황에서 신진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 제도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유지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기존)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심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후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전시
- (개선) 기존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이 1편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후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 전시
-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접수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042-481-3101)

2021년 6월 10일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20. 6. 9.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입니다.
 -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 법 시행에 따라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21.6.10.)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도입
-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042-481-494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토지까지 매입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 ▣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 보존조치 된 토지만을 매입하여,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 인접 토지

-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 ▣ 이에,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2021. 6. 9. 시행)을 통해서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토지까지로 매입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
-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로 확대
 - 보존조치를 한 토지와 그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까지 매입대상 범위 확대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6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시,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함께 수여합니다.

-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 온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공로를 격려하고 전승환경 사기 진작을 위해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합니다.
- ▣ 신규 인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외에 현 보유자와 단체에게도 추가로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합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21.5.25.)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 **추진배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 온 보유자 등 전승자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통해 전승환경 개선
- **주요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 현행의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 대통령 명의 증서를 함께 수여하며, 기존 보유자 등에게도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05

환경·기상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77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Before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After

'21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2)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 배출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

▣ 아울러, 올해 5월에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8천명)를 통한 현장홍보 및 언론, SNS,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추진합니다.

* 공동·단독주택 수거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계도 수행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페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20.6.)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추진배경** 국내 페플라스틱 수입 제한('20.6월),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 **주요내용**
 -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21.12월)
 - * 전국 공동주택 지역은 '20.12월부터 기 시행 중
 - '20년 하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단독주택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 **시행일** 2021년 12월 25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044-201-7146)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전략계획이자, 물 분야 법정계획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각 과제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이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 전반을 포괄하여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물관리 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비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목표) 건전한 물순환 달성
 - (혁신정책)
 -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 (추진전략)
 -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물 기반시설관리 효율화
 - 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시행일** 2021년 6월 12일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8)

올해 6월부터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간 약 100여 곳

- ▣ 현행 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일반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은 하반기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 환경부의 실태조사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시설은 자가측정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보아, 중복되는 측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감염병 등 예방조치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보도자료(’21.5.18.)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추진배경** 감염병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 필요
- **주요내용** <시행령 : 시행일 ’21.5.25.>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면제
 <시행규칙 : 시행일 ’21.6.11.>
 - 감염병 예방조치 또는 재난 발생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연기 근거 마련
 - 건축자재 제조사이면서 시험기관인 경우, 자사 제조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금지 근거 규정 신설 등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8)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됩니다.

- 기존 공개대상 기업(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 이외에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인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21.4.13.)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확대 시행

- 추진배경 ESG 투자 등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 주요내용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 추가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35)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 ▣ 환경 영향이 큰 대형사업장(대기 또는 수질 1·2종)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통합허가 대행업자가 허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업 등 19개 업종 대형사업장에 대해 주변 환경 영향, 기술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대 10개의 환경오염물질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맞춤형 기준을 부여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
- ▣ 통합허가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인력과 시설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21.1.5.)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 **추진배경** 통합허가는 특성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통합허가의 품질을 제고
- **주요내용**

 -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기준
 - (인력기준) 고급인력(기술사, 박사급) 1명 이상,
일반인력(기사, 석사급) 4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기준) 사무실, PC, CAD 등
 - 통합허가 대행업자 준수사항
 -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
 - 기초 자료 보존
 - 등록증이나 명의 대여 금지
 - 재대행 금지 등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2)

수은을 포함한 제품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수은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처리해야 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 분류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보관·운반·처리해야 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20.7.14.)

수은폐기물 분류 신설 및 처리기준 마련

- **추진배경**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은폐기물 처리
- **주요내용**
 - (분류)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보관·수집·운반 기준) 기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이중 밀폐 포장
 - (처리 기준) 수은함유폐기물의 수은은 회수, 회수 수은은 적정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 처리 잔재물은 이중 밀폐 포장하여 매립
- **시행일** 2021년 7월 22일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818)

석면피해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석면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 피해자가 수술 등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과 피해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보도자료”(‘10.12.8.)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석면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피해자 관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 **주요내용**
 -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요양급여를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 이내로 연장
 - 석면피해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 070-7850-6355)

2021년 6월부터 태풍의 발달에서 소멸까지 전주기 종합 정보를 제공합니다.

- ▣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 단계부터 진로뿐만 아니라 강도, 강풍반경 등을 추가하여 상세히 제공하고,
- ▣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예측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 **추진배경** 태풍 방재 대응을 위한 태풍정보 서비스 개선
- **주요내용** 태풍단계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부터 세력 약화 이후까지 전주기 상세 태풍정보 제공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94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시행일 : 2021년 10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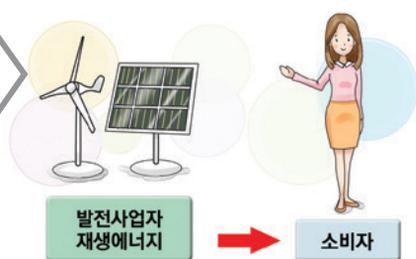
Before

그동안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를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9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존에 법률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절차가 부재하였으나, 체계적인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활성화 하였습니다.



3 특허청

자세한 내용은 p.101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시행일 : 2021년 6월 23일

Before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fter

'21년 6월 부터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4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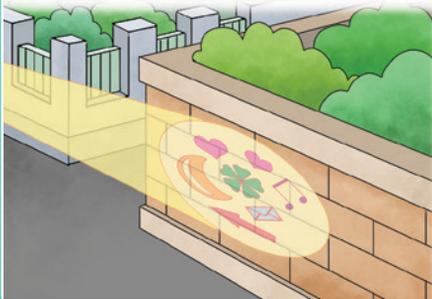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02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Before

지금까지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After

'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디자인 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8)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출시(21년 12월 예정)됩니다.

- 지난 5.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는 1호 사업으로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양국 산업·연구계의 교류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군·관 협력용 비화통신서비스(해군3함대, 전남도청),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연세의료원 등) 등 16개 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했습니다.
- 올해는 48개 정부부처를 연결하는 ‘차세대 국가융합망(행정안전부)’에 도입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행정·시설보안(대전시청, 대전상수도본부, 정수사업소), 의료기관간 원격협진(순천향대병원 서울·부천) 등 15개 기관에 19개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정책소통)보도자료)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21.5.25.)

양자암호통신망 시범사업 기대효과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44-202-6453)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소기업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21.6.1.)

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

- **추진배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
- **주요내용**
 - ① 일정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② 공시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③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의무 대상 기준 마련 (대통령령)
- **시행일** 2021년 12월 9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직급)의 획일적 규정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던 문제를 개선해 기업규모에 따라 CISO 지위의 폭을 넓히고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며 검직제한도 완화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부담은 줄여 CISO 제도의 실효성을 높게 됩니다.

■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CISO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장급 직원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이용자가 많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CISO를 신고하게 하며, 신고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해 정보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기존에 CISO가 수행한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기감사, 정보보호대책 마련 업무 외에 정보보호 공시, 개인정보 보호 등 유사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활동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보도자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 **추진배경**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획일적 지위(임원급), 광범위한 신고대상 (단순홍보용 홈페이지 운영자 등도 포함), 검직제한 등 기업부담을 가중해 규제 완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① 기업규모별 CISO 지위 기준 마련
 - ②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정비
 - ③ 겸직완화
 - ④ 신고기한 연장 등
- **시행일** 2021년 12월 2일(예정)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044-202-6434)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 그동안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통신재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통신재난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의 망에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통신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였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21.6.1)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 **추진배경** KT 아현국사 화재(‘18.11월)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제·개정
- **주요내용**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지정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 통신재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재난로밍 명령 가능
 -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
 -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수단 강화
- **시행일** 2021년 12월 2일(예정)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044-202-6446)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21.10월 고시 예정)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평가 면제로 이용자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평가비용 절감, 기간을 단축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서명 평가 중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제통용평가로 인정하여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고시)’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국제통용평가’를 고시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보도자료)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21.5.20.)

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

- **추진배경**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 추진
- **주요내용**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내 전자서명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해외 전자서명인증 관련 평가(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시행일** 2021년 10월말 예정(국제통용평가 고시 이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 044-202-4512)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21.4.20. 제정 및 '21.10.21. 시행

-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이 강화됩니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경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전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 **추진배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정
- **주요내용**
 - (정책수립)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제5조)
 - (R&D 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제8조), 시범 사업(제10조), 상용화 지원(제11조) 등
 - (국제협력) CTCN 등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제12조)
 - (인력양성) 기후변화대응 융합 인력양성(제14조)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044-203-5172)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음

■ 이를 통해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PPA 제도는 2021년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법령>전기사업법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업의 RE100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직접PPA 도입 추진
-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시행일** 2021년 10월 예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044-203-4407)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추진절차를 마련합니다.

- 공모 및 단지지정 등의 절차를 마련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포번호 제17598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절차 마련

- **추진배경**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세부절차를 마련
- **주요내용**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 추진절차 마련
 -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수립 근거 마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촉진사업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044-203-5152)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전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시 기존에는 ‘전기공사업자’만 처벌대상이었으나,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에는 별도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토록 처벌규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법령>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 **추진배경** 전기공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
- **주요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금지대상을 (현행)공사업자 → (개정)공사업자+무등록업자 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 불법 하도급 등 적발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
- **시행일** 2021년 4월 20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044-203-441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044-205-3508)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최근개정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 **추진배경**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인구감소율, 출생률 등) 및 지정 절차(행안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정) 규정 (안 제2조의3)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 (안 제12조)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의11)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044-203-5224)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을 제고합니다.

-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법령>석유사업법

석유 수급정보 비밀유지 예외 신설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추진배경** 석유수급정보 활용 제고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 **주요내용**
 - (비밀유지의무 예외) 「석유사업법」 제38조의3
 - ① 국세의 부과·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석유사업법」 제41조의2
 -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 **추진배경**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
 - * 가입대상 : (기존) 중소기업 → (변경) 기존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의료비영리법인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유럽진출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SGBC)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과 (☎ 042-481-6805)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irtual SGBC)가 운영됩니다.

- '20년 12월, 한국 중소기업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의 MOU 체결로 '22년 룩셈부르크 SGBC가 설립될 계획입니다.
- '22년 설립에 앞서, '21년 6월부터는 온라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Virtual SGBC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된 우리기업의 유럽진출을 도와드립니다.
- 현지 정착을 위해 기업 및 기관과 B2B 매칭 정보 제공과 유럽시장 수요조사 및 현지법인화 행정 절차 등 관련정보도 안내해 드립니다.
- Virtual SGBC는 우리 중소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과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로, 한국의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와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혁신청이 공동운영 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기부-룩셈부르크, 친환경·디지털 분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마련 한다*(20.12.9.)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앞으로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이로써 특허법('20.12 시행)에만 적용되었던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기존 도입된 지식재산 침해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적용되어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 권리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보도자료('20.12.)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 **추진배경**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766)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증강·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디자인 보호를 위해 ① ‘화상’ 자체가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고, ② 디자인의 실시행위는 기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등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기술 화상디자인 사례〉



가상 키보드
(Brookstone.com)



스마트 팔찌
(cicret.com)



공간에 표시되는
피아노 건반
(sony.com)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daimler.com)

■ 개정법 시행에 따라 출원서식과 디자인의 설명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보도자료('21.3.)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 **추진배경**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화상디자인이 산업전반에 활용됨에 따라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필요
- **주요내용**
 - (보호대상 확대)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디자인으로 보호
 - (실시행위) 화상디자인을 생산·사용·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092)

우편으로 발송되던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권리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상표 등의 권리자에게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간, 납부금액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보냈던 연차(갱신)안내서를 개인권리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우편 안내문의 모바일 전환으로, 권리자는 장소에 상관없이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제 때에 받을 수 있으며,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권리자이거나 모바일 안내서를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개인권리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 **추진배경** 우편 안내문의 모바일 전환으로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권리자
 - (서비스 내용)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 * 모바일 안내서를 열람한 권리자에게는 별도 종이 안내서를 보내지 않으며,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권리자에게는 우편으로 종이 안내서를 발송
- **시행일** 2021년 10월 중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02-2110-1271)

2021년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되어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됩니다.('방송법 시행령' 개정)

- 또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하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2부 등으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의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방송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한다’(21.4.27.)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 **추진배경**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규제 해소
- **주요내용**
 -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허용
 -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한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기준 적용
 -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 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07

국토·교통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After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5)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8.18. 공포, '21.6.1. 시행)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1.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신고' 검색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한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21.6.1.)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임대료 변동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항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을 정보, 임대료·계약기간·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내용
-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RTMS 홈페이지)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 **기타** 신고 데이터 시범공개('21.11.), 1년간 계도기간('21.6~'22.5) 운영 등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8)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됩니다.

- ▣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합니다.
- ▣ 해당 서비스는 '21.7월(예정)에 운영을 시작하여,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하여 정식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공항 짐배송 대행서비스 개시('21.7.)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국제여행이 급감(△84.2%)하고 국내여행으로 대체되는 추세로 급격한 항공수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위탁수하물 배송대행서비스 도입·운영 필요
- **주요내용** • (대상자)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 중 서비스 신청자
 * 시범운영을 거쳐 출발공항을 청주·김해공항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
- 국내선 출발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
- **시행일** 2021년 7월(예정)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226)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수도권(화성, 인천)에 최초로 구축됩니다.

- ▣ 그간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드론 비행시험 등을 위해서는 지방 드론전용비행시험장(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을 이용해야했으나, 하반기 부터는 화성('21.7.), 인천('21.10.) 비행시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화성, 인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개요

- **추진배경** 급성장중인 세계 드론기술 시장*을 빠르게 따라잡고, 국내 연구·개발시장 성장을 견인할 드론 비행시험인프라 구축 필요
* 세계 드론시장 연 29% 성장전망에 따라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 구축 후 비행시험·기술연구 중
- **주요내용**
 - (구축규모) 드론의 비행성능을 테스트 할 전문시험장비 및 비행구역, 이·착륙장 등을 구비한 3층 규모의 인프라 구축
 - (이용대상) 드론 연구·개발 기업 및 개인
 - (운영계획) '21년 하반기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22.1월 본 운영개시
-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항공 안전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시작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9)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합니다.

- ▣ 동 센터는 그간 정부기관, 항공사, 관계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고
- ▣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계자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항공안전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의 운영은 독립적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위탁 운영될 것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운영('21.5.26.)

항공관계자별 맞춤형 항공안전정보 제공

- **추진배경** 개별 항공관계자(정부기관·항공사·공항공사 등)의 안전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체계 구축
- **주요내용**
 - 민·관에 산재되어있는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항공안전 동향 등 주요 안전정보를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련기관 등과 공유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 044-201-415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다만,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설명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21.5.20.)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
- 시행일 2021년 7월 27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 044-201-4154)

그간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 ▣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설명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21.5.20.)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안)

• 등록요건(안)

구분	등록기준
일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법인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시설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천㎡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장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 단, 등록요건(안)은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21.5.21.~6.30.) 중에 있는 제정안으로서, 향후 법령 최종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시행일 2021년 7월 27일

08

농림·수산·식품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22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시행일 : 2020년 8월

Before

'20년 8월부터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평균 2척씩 투입하여 수출물류 적체를 완화하였습니다.



미주항로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After

'21년부터 선복부족 및 운임상상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해상물류 지원을 강화합니다.

미주항로
임시선박
매주 1척



미주항로 임시선박 월 평균 4척

2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23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해양폐기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해수부(총괄), 환경부(유성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27)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2021년 하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2년 상반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 보육센터 수료 후에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창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기자재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 스마트팜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참여 기업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마트팜 혁신밸리 검색(완공시점에 배포예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추진배경**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 **주요내용**
 -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 습득 및 경영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정착률 유도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1년 하반기(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시)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2)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9.8.26.)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9)

기존의 축산 관련 종사자 대상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및 이동 제한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였으나,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문제*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일부 교육 과정 온라인 서비스 불가, 동시 접속자(교육생) 수 제한 등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교육의 접근성 및 교육생 수강 이력 정보 관리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고령농가 등 정보화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을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수강이 편리해지고, 교육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보도자료(잠정)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재 구축

- **추진배경**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재구축 필요

* 기존 시스템은 일부 과정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
- **주요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 전체 교육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온라인교육 접근성, 교육생의 교육이력 관리, 교육콘텐츠 질 향상 등 온라인교육시스템 전반 개선
- **시행일** 2021년 10월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업장과 상관없이 현행법상 농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 금번 개정으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 ①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관보보기(일자별)>제20022호('21.6.15.)
- ②NH농협생명 홈페이지>회사소개>보도자료>농업인안전보험 상품출시 보도자료(상품출시 시점에 배포예정)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타 산업에 종사하여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는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피보험자 범위 확대) 산재 또는 어선원재해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허용(제6조2제2항 신설)
 -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시행일** 2021년 6월 15일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2)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하였습니다.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21.8.)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 **추진배경**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 **주요내용**
 -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85)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 3개소) 운영합니다.

- ▣ 서울에만 설치·운영되던 스마트 스튜디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권역 2곳(전남, 경북)에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 ▣ 아울러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과 병행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번기 스튜디오 방문 애로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예산둘러보기>2021예산>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년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 **추진배경**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나 신규 웹콘텐츠 제작, 지속적인 수정 및 업데이트(상품 이미지, 상품설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
- **주요내용**
 - (개요) 농가 및 식품기업 대상 홍보용 사진, 영상광고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또는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 (대상) 희망 농가 및 농식품 업체, 농식품 수출업체
 - (신청) 온라인 예약페이지(<http://at-studio.kr>)를 통해 지역별 신청 스튜디오 및 희망 콘텐츠 신청
 - 수도권 외 원거리 농가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역센터 2개소 확대 운영(전남, 경북)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14)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20.10.14.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6호))

- 버섯류, 과일·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하여 섭취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경과한 날(‘21.10.14.)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새소식)홍보자료>보도자료>‘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20.11.12.)

농산물 표준규격품 의무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 추진배경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안전사항 문구 표시하여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 ① 버섯류 :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류 :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 ③ 신선편이농산물 :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 세척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은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예시) >
 - ① 버섯류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류 : “세척 후 드세요.”
 - ③ 신선편이 농산물 :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5)

선복부족 및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들이 시행됩니다.

- '20년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수요가 집중되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합니다.
- 또한, 미 서안항 임시선박의 선적공간 1,000TEU를 중소·중견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 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 (현행) 임시선박 선복의 50%이상을 중소·중견화주 물량 선적
 - (확대) 임시선박 선복의 60%이상을 중소·중견화주 물량 선적

수출물류 지원 실적('21.5월말 기준)

- **(임시선박)** 미주·유럽 등 주요 원양항로에 그간 총 3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20.8~)하여 수출화물 9.1만TEU를 추가 운송
 - * (미주) 26척/81천TEU, (유럽) 2척/5천TEU, (동남아) 5척/5천TEU
- **(선적공간 제공)** 정기운항 선박의 주당 선복량 450TEU(미주400+유럽50)를 중소화주에 우선 배정하여, 그간 26회 지원(접수마감 기준, '20.11~)
 - * 美서안항 선복배정기간 연장(~12월) 및 美동안항·유럽항 매주 50TEU 신규 배정 중
- **(‘컨’박스 공급)**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해 40피트 컨박스 4.3만대(2천억원, '20년 12월 계약)를 HMM에 긴급 공급·활용('21.3~)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민간합동* 종합대응센터를 운영('20.12~)하여 총 466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
 - * 산업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운협회, 무역협회 등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200-5303)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해수부(총괄),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해양폐기물 문제가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유엔환경총회(UNEP) 등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 규범 마련 방안 논의 중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14일에 적용됩니다.

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 **추진배경** 해양폐기물은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 유입,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기능)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중요 정책,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 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을 심의·조정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5)

해외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입주가 가능해 집니다.
- 아울러,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입주계약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입주*도 허용됩니다.
 - *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해외매출 비중) 50% 이상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복귀 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21.6.9.)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 추진배경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지원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포함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입주 허용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수산 식품기업 해외 판로 확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044-200-5483)

주요 수출국의 대표 온라인몰에 'K-씨푸드 판매 전용관' 5곳*이 7월부터 개설되고, 현지 맞춤형 홍보·판촉행사도 병행됩니다.

- * 중국(타오바오), 미국(아마존, H-프레시), 태국(쇼피), 싱가포르(쇼피)
- * 총 100여 개사의 수출상품(업체 당 2~5개 상품) 입점

☐ 코로나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시장에 우리 중소 수출업체 상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www.k-seafoodtrade.kr)의 '365 상담창구'와 '온라인 수출상품 전시관'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 상담, 바이어 알선 및 무역애로 해소 서비스를 지원 받고, 수출기업의 상품도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 '365상품 창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되어 7월부터 운영되며, 온라인 상품 홍보는 전시관 상품정보 등록에 대한 수출업체 대상 교육을 통해 8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입니다.

- * 7개국 10개소 :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K-씨푸드,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주요 수출국 대표 온라인몰에 'K-씨푸드 판매 전용관'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온라인 수출지원 서비스 확대로 무역거래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K-씨푸드 판매 전용관) 수산물 중소기업 상품 입점·판매 및 해외 주요 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라이브방송판매, 홍보·판촉 프로모션 추진(7월~)
 -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온라인 수출상품 전시관 운영, 온라인 365상담창구 운영, 현지 시장동향 및 바이어 정보 제공, 무역거래·알선, 무역애로 지원 등
- **시행일** 2021년 7월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 '21년 선원최저임금 월 2,249,500원

■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최저임금액 수준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 선원들의 생계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1일 부터 시행중으로,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선원 상병보상 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 **추진배경** 선원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병보상액을 상향하여 선원 생계보호 기능 강화
- **주요내용**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선원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선원최저임금만큼 지급하도록 개정
* 육상직, 어선원 모두 상병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보상 지급액으로 하고 있음
-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시행일 당시 요양 중인 선원에게도 적용)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8)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신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됩니다.

* 선박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등)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

- 기술 잠정기준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 검사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잠정기준은 2021년 6월 2일 이후에 시행되는 선박검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0.1.1.)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20.7.22.)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 **추진배경** 입자상물질 배출저감기술(DPF)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통해 상용화 지원
- **주요내용**
 - (규정내용) 등 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을 위한 요건 등
 - (활용방안) 비공식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한 후 공식기준 마련에 활용 가능
- **시행일** 2021년 6월 2일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7)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이 기존 중부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충북)에서 호남권역(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농·축산물에 집중되어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원스톱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 호남권역 수산물 공급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는 어업인들이 생산한 연근해 수산물을 10개 로컬매장*에 별도의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 *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등 7개사(10개 매장)
- 공급자들은 신선 포장 시설, HACCP* 가공 시설 등을 갖추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추었으며, 로컬매장은 수산물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21.5.13.)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수산물 직거래 촉진
- 주요내용 농축산물 중심의 로컬직매장에 수산부문 입점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One-Stop) 쇼핑 지원
 - 20년 사업자 : (공급자) 보령수협, 서천군수협
(로컬푸드 매장)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 품앗이마을(5개 지점), 행복한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 21년 사업자 : (공급자)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매장)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 시행일 2021년 9월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63)

귀어·귀촌을 원하시는 국민들은 '귀어귀촌 정보통합제공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간, 귀어·귀촌과 관련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정책자금과 일자리는 수협, 워크넷 등에서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귀어귀촌 정보통합제공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어귀촌 정보통합제공 플랫폼'은 2021년 12월부터 접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보도자료(예정)('20.9.14.)

귀어·귀촌 정보통합제공 플랫폼

- **추진배경** 어촌정착 관련 정보가 기관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귀어귀촌 관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초기정착에 애로
- **주요내용** <제공정보>
 -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정책, 홍보
 - 수협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지원
 - 워크넷, 지자체, 수협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귀어인 현황, 지역의 사업현황
 - KOMSA의 어선거래 시스템 등
- **시행일** 2021년 12월

09

국방·병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37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16일

Before

지금까지 군부대 입영 후 신체검사 실시 하였습니다.

군부대 입영신체검사



After

'21. 8. 16. 군부대 입영자부터 입영 전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장비 활용, 입영판정검사 실시합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2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38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서울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 하반기부터 더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주·대전 센터 추가 설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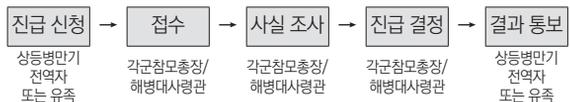
2021년 10월 14일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할 수 있게 됩니다.

(‘21.4.13. 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21.10.14. 시행)

- 과거에는 병 진급도 일정 공석만큼 선발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채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많아 이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법 시행으로 성실하게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추진배경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과거 병 진급 제도로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을 특별진급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 주요내용
 - (적용대상자)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
 - (특별진급 결정권자)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거 복무한 부대장)
 - (특별진급 신청) 본인 또는 그 유족
 - (특별진급 결정)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7171)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공로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6·25전쟁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인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 지급을 통한 명예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의 길 열려”(21.4.13.)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
- **주요내용**
 - (보상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의 비정규군을 수행한 사람
 - (유족)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보상심의위원회)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공로금의 지급신청)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 지급신청
 - *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1)

2021년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이 대체복무요원* 까지 확대됩니다.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

- 2021년 10월 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는 것과
-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병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 **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음
 - * 2021년 3월 현재 약 31만여명 가입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은 물론 민간의료시설에서도 구분 없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택권을 확대 보장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예비군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여 병역의무자 중 유일하게 예비군만 민간의료시설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이에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택권을 확대하여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예비군의 훈련 여건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예비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 추진배경 타 병역의무자 대비 예비군만 민간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 해소 및 훈련 여건보장 필요
- 주요내용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2021년 8월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前)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 합니다.

- 지금까지는 입영 후(後)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일 전(前)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 올해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상 부대	2작사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舊 1군)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舊 1, 3군)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 이로써 귀가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입영 후 신체검사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 주요내용
 - 입영일 전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 판정검사 실시, 귀가제도 폐지
 -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예정
- 시행일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자(현역병, 군사교육소집자)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20년 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시상담센터를 대구·광주·대전에도 추가 설치하여 '21년 7월부터 상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병역의무자들이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선호도검사' 후 군 특기 추천을 받거나 심층상담을 위해 '센터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 지원

• 주요내용

1:1 병역진로상담	① 군 특기 연계, 적성검사 실시 (직업선호도검사) ② (병무청) 전문상담관 1:1 상담 → (각 군/고용부 등) 군 생활 및 취업지원 안내·상담
군 생활 정보제공	①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②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①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체험관 운영 * 군 생활용품·사진 전시,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군복·전투식량 시식 체험, 복무 중인 병사 이야기 등

- 센터운영 서울 센터(연중), 대구·광주·대전 센터 ('21년 7월부터)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병무청누리집 > 쿼 메뉴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개인·단체신청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2021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 추진배경 ILO 강제노동 협약 비준 관련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 부여 필요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 (종전)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가능
 - * (변경) 본인 희망 시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 수형 보충역 및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은 제외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2021년 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 한해서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 * 5개 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 3개 질환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이즈바이러스,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로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필요
-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 (종전)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
 - * (추가)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이즈바이러스,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 시행일

2021년 10월 예정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2021년 7월부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입영일이 연기됩니다.

-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입영일 직권 연기

- 추진배경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도피성 입영방지
- 주요내용
 - 병역법 제61조 제3항 신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략>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2021년 5월부터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납니다.

- 그동안은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기술행정(5개) :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 * 전문특기(4개)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 추진배경 특기별 임무수행 고려, 색약자에 대한 지원자격을 완화
- 주요내용
 - 육군 9개 특기 지원자격 개선, 색약 있는 사람의 특기 선택 기회 확대
 - * 기술행정(5개) :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 * 전문특기(4개)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 시행일 2021년 5월 지원자부터 적용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4)

2021년 7월부터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을 실시합니다.

- '20년 7월 공군병에 대해 화상면접을 시범 실시한 이후 '21년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병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 그리고, '21년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하여 모집병 면접대상자는 전원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 * 여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특기병 제외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전면 실시

- 추진배경 원거리 거주자 등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 면접 부담 해소
- 주요내용
 - ('20년 7월) 공군 일부 직종 화상면접 실시
 - ('21년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 일반/기술병 확대 실시
 - ('21년 7월) 해군·해병대 일반/기술병 확대 실시
- 시행일 2021년 7월 지원자부터
 - * 여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특기병 제외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54)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군 생활 조기적응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가 신설됩니다.

-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 지원 가능합니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2021년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2021년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해병대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 추진배경 군 생활 조기적응 및 소속감·자긍심 고취
- 주요내용 • 동반입대병
 - 친구, 동료, 친척 등 2인이 지원하여 전역 시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일반(보병특기)/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에서 복무
 - 지원계열/복무부대 : 전 계열/전 부대(초임배치 부대 제외)
- 시행일 동반입대병('21년 8월 지원자), 직계가족복무부대병('21년 9월 지원자)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5)

2021년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기간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4회 이상 경고 시 고발)을 받고,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됩니다.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
- 예술·체육요원의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술·체육요원 특기 활용 공익복무 (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 추진배경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편입 등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확정(국무총리 주재)
- 주요내용
 - 의무복무기간 내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제한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미달성 시 편입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시 '경고' 처분하고, 미충족 및 허위 시간의 2배 연장
 - 복무의무위반으로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 등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고발 및 편입취소, 편입취소자 재편입 제한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 공익복무 544시간 미충족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규정은 '21. 4. 13.부터 시행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3)

2021년 7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됩니다.

-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편입 지연에 따른 의무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단축 강화

- 추진배경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지정업체의 평가기준을 강화
- 주요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 업체에 대하여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 * 기존 : 편입 지연기간 6개월 초과 업체,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 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6)

2021년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정보공개적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였습니다.
-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확대는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추진배경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 기여
- 주요내용
 -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21.4.13.)
 - ② 개정내용 :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 현행 : 공직자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 개정 : 현행 +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함)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병역공개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발전TF (☎ 02-2079-6456)

방산업체 간 상호보증·공제(보험)를 통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출범합니다.

- 기존 방위산업진흥회(보증사업본부)에서 방위사업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증·공제사업의 안전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별도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제조합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現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위산업진흥회가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공제(보험), 융자, 연구·교육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원 회사에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2021년 5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의 법인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6월 이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 **추진배경** 보증 및 공제사업의 안전성,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방위 산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
 - * 現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 **주요내용**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독립적 별도 법인으로서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출범. 기존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보험, 융자·교육 연구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 회사에 제공
- **시행일** 2021년 6월(예정)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5)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하여 한번 개발한 국산 부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 부품등록시스템 : <http://compas.dtaq.re.kr>

- 시스템 등록 대상은 국산화 개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부품으로, 기본정보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등록하고 부품업체에서는 추가정보(부품을 적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등)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제도를 통해 기존 부품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는 참여하기 어려웠던 부품 공급망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산화 개발한 무기체계 부품을 다른 무기체계에에도 적용하여 한번 개발한 국산 부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 필요
- 주요내용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
- 시행일 2021년 6월(예정)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16)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 지체의 책임이 있는 협력업체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협력업체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던 체계업체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예시

- 무기체계 계약금액 : 1,000억원, 협력업체 계약금액 : 100억원
- 지체상금률 : 0.075%(물품의 제조·구매), 납품 지체 1일 발생

구분	체계업체	협력업체	체계업체 실 부담금	국고환수
現 규정	7,50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6,750만원	7,500만원
개정(안)	750만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0원	750만원

- * 협력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분에 대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체계업체(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고, 체계업체는 국가에 손해 배상
- * 개선방안 적용시 체계업체의 부담은 대폭 완화되는 반면 협력업체는 기존과 동일, 국고환수는 협력업체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축소
-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계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지체상금 비용은 없음.

-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개정(2021년 7월 예정)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체상금 제도 개선

- 추진배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시행일 2021년 7월(예정)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02-2079-6927)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이 삭제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 물품 적격심사 기준 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청렴서약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기준은 현행 유지함으로써 불공정한 행위 (뇌물, 하도급 불공정 행위, 담합, 사기·부정행위, 허위서류 등)를 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 추진배경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소지
-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을 삭제,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
- 시행일 2021년 7월(예정)

10

행정·안전·질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60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6월 9일

Before

기존에는 일반사법경찰이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사건 등을 수사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After

'21년 6월부터는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여 재범억제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2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61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는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3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162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시행일 : 2021년 5월 17일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 전형적인 3일(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의 한계를 감안, 교정시설 특수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합니다.



4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7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5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8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 → 네이버(2차) → 우편(3차) 발송 합니다.



6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9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7월 13일(성폭력 사건) 2021년 10월 21일(성희롱 사건)

Before

지금까지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합니다.



7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80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효과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8 법제처

자세한 내용은 p.182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Before

지금까지는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21년 9월 24일부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9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188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Before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0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98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201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명·익명처리 실습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기존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을 실무지원까지 확대하고,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법무부 전자감독과 (☎ 02-2110-3795)

2021년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됩니다 (20.12.8.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여 담당 경찰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도 법정형 대비 낮게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전자감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21.5.3.)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 추진배경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한 재범억제력 강화 필요
- 주요내용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자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소 전문 수사요원이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 02-2110-4091)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 ▣ 그간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였으나, 7월1일부터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는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시행 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산 방지* 및 외국인의 여권정보가 상시 현행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여권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2019년 여권정보 변경신고 위반 건수 8,768건(과태료 약 11억 원)
- ▣ 다만,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및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공지>홍보자료>미디어자료>“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알림”

여권 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 부여 정책 시행

- 추진배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출입국사범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여권번호를 개인 식별 정보로 활용하여 등록외국인의 출국상태 등 정보관리에 정확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운영 실시

법무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 02-2110-3883)

2021년 5월 17일부터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이 설치·운영됩니다.

(법무부훈령 제1354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은 코로나19 교정시설 관련 현안 대응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차관을 보좌하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이 긴급대응단장을 겸임합니다.
-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써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감염병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교정시설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교정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을 위하여 교정본부 내 생활방역대책팀, 수용처우팀, 대외협력팀, 현장대책팀 등 다수의 T/F를 구성·운영하여왔으며,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상시적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은 기존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진행하던 업무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역학 정보 수집, 원인 분석 및 통합감시, 주기적 PCR검사, 백신 접종 및 관리, 코로나19 백신 제작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설치·운영

- 추진배경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 교정시설의 구조적 한계 및 특수성 등으로 민간영역의 방역관리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교정시설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감염병 원인 분석 및 통합 감시, 현황 분석 및 백신 제작, PCR검사,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교정시설과 관련한 업무 총괄
-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법무부 전자감독과 (☎ 02-2110-3723)

2021년 6월부터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2021년 6월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이 서울시 및 경기도 16개 시**에서 개시되고,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가 추진됩니다.

 - * 안심귀가 서비스 :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CCTV와 스마트 폰앱을 연계하여 시민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CCTV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 등 지원
 - ** '21년 6월 경기도 16개 시(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성남)에서 서비스 개시
- ▣ 범죄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안심귀가 서비스’와는 별도로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21.5.3.)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 **추진배경** 국민이 전자감독시스템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으로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 **주요내용**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발생할 경우 ‘안심귀가 서비스’와 별도로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 가능
- **시행일** 2021년 6월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 소년보호과 (☎ 02-2110-3357)

소년원학생의 성공적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돕기 위해 소년원 특성화학교를 기존 교과교육 중심에서 교과·직업교육 통합형 과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 기존 소년원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과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학생은 본인이 배치된 과정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 통합형 교과교육 과정은 일반학교 교과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소년원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의 병행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비행성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 개편 교육과정은 '21년 하반기 중 대구소년원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년원 특성화학교 패러다임 전환

- 추진배경 소년원학생의 성공적 사회정착 및 재범예방 유도
- 주요내용
 - (교과교육 개편) 교과교육 및 직업교육 통합형 과정으로 개편·운영
 - (시범운영) 대구소년원(2021년 하반기 중)
- 시행일 2021년 하반기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법무부 소년보호과 (☎ 02-2110-3346)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 임시조치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수도권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위탁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법무부는 비행성이 경미한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효과적인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합니다.
- '21. 6월 중 대전소년원 본관이 위탁소년 전담 수용시설로 전환되며, 하반기 중에는 경기 지역에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21.5.3.)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추진배경 초기 비행단계 위탁소년에 대한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강화 필요
- 주요내용 소년분류심사원 단계적 확충
- 시행일
 - 2021. 6월 대전소년원 본관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전환
 - 2021. 연중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설립 추진
 - 2022. 이후 부산·광주·대구 지역 소년분류심사원 개청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651)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 ▣ 「장애인복지법」개정·시행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12.3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하여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
-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648)

하반기부터는 시정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정명령의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 요건이 삭제됩니다.

-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피진정인 및 피권고기관의 권고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인권>인권보호제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요건완화

- **추진배경**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현실적 제약 및 제도상 보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재 시정명령 요건은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과 차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 훼손되는 공익이 중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건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하여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
-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044-205-2270)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20.12.22.)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법률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여, 입찰계약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하여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를 기준으로 '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되어, 청구인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 저장매체의 변화(CD→USB 등)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가바이트(GB)당 800원의 비용을 부과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추진배경** 정보공개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 **주요내용**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규정
 - 입찰계약에 대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구체화 및 확대
 - 개별 청구에 의해 특정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필요시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정보공개법 시행규칙>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개편
- **시행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입찰계약 사전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청구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수수료 개편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1)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부담없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표1】과 같습니다.

시설 유형	
법률 규정	시행령 규정
① 어린이집	① 외국교육기관
② 유치원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초등학교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④ 특수학교	④ 사회복지관
⑤ 학원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아동복지시설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1만㎡이상)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⑧ 국제학교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⑨ 외국인학교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⑩ 대안학교
⑪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표 1】 어린이 이용시설 현황

-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안내

- 추진배경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
- 주요내용
 - (사업 기간) 2021년 7월~12월
 - (사업 내용)
 - 교육대상 : 안전교육 대상자* 중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 :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은 비용 부담 없이 위탁기관에서 교육 진행
(그 외의 인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자비로 교육 진행)
 - 교육인원 : 70,000명
 - 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 소아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 교육시간 : 실습교육(2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
 - 사업방식 : 민간 전문기관('21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실시
- 시행일 2021년 7월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044-205-2474)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도입됩니다.

-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 앞으로는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민원처리 기관 등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 필요없이,
- 본인의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정부법 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는 2021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 044-205-2466)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권이 기관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요구권을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다만,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 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추진배경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권을 기관 뿐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확대
 - 현행 :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관만이 공동이용 신청권을 가짐
 - 개정 : 민원인도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요구권을 가짐
 - 다만, 민원인이 전자서명, 생체정보,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5)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다만,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사진을 사전 등록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4.20.)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추진배경**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확대
 -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사진을 사전 등록한 후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시행일** 2021년 12월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044-205-3553)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를 부여하여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해집니다.

-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고,
-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를 확대합니다.

-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서도 주소 사용이 가능해지고, 도로명 부여를 국민이 신청할 수 있게 되며,
-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도로명주소법 개정안 보도자료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 **추진배경** 미래도시에 대응할 수 있는 주소 부여 체계 및 관리 근거 마련, 도로명 부여 신청 등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불편사항 개선
- **주요내용**
 -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시설물 등의 위치안내를 위한 주소체계 마련
 - 지하·고가도로 및 대형건물 내부통로(코엑스 등)에 개별 도로명 부여
 -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가능
 - 국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신청권 확대
 -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공부여에 등록된 주소를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기관에서 자체 변경
 -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도 상세주소 신청 가능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044-205-4383)

「민방위기본법」 개정법을 시행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로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33조의2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5)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제15조의2 신설)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제25조의2 신설) 역시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21.3.23.)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도입

- **추진배경**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 **주요내용**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 지원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6)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2021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1차)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네이버(2차)로 재발송 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네이버로 받은 세대주는 네이버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네이버로 고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1일 이내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 합니다.
- 또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들은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보통신망 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정보서 확인 (1일 소요)

참고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제도안내)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수신대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 수신시점 성범죄자 전입 전출시
- 수신채널 카카오톡(1차), 네이버 앱(2차)
- 수신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5, 6392)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발방지조치 및 피해자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 공공단체의 장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 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 성폭력방지법(성폭력사건) 시행 : '21.7.13. /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사건) 시행 : '21.10.21.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불법촬영을 삭제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20.12.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 현장점검, 시정요구 등 관리 강화,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책임 강화('21.3.24.)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 추진배경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사건 예방 및 재발방지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폭력·성희롱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및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 필요 시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가능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 성폭력방지법(성폭력사건) 시행 : '21.7.13.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사건) 시행 : '21.10.21.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4)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21.1.4.)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를 1년간 불이행시 형사처벌
- 시행일 2021년 7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 02-2100-6162, 616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없이도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 **상담방법** 24시간 긴급상담전화 및 온라인게시판 접수
 - 전화 : 02-735-8994 및 여성긴급전화 1366
 - 온라인게시판 : <http://d4u.stop.or.kr>
- **지원사항** 상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수사·법률·의료 등)
-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044-200-6737)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21.9.24. 시행).

-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21.3.23.)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 **추진배경**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 납부 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
- **주요내용**
 - **종전**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 법률마다 허용 기준이 상이
 - **개정**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성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044-200-6783)

2021년 8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령정보법 시행(‘20.12월)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공공기관 규정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개별 공사·공단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찾아야 했던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21.3.31.)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 추진배경 법령정보법의 시행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350개 공공기관(‘21년 기준)의 규정 중, 법령 위임사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
- 시행일 2021년 8월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044-200-6855)

올해 하반기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시각콘텐츠로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 ▣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
- ▣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표·그림·사진 등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어렵게 느꼈던 법령의 내용을 시각콘텐츠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

- 추진배경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법 활용 필요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표·그림·사진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



복잡한 문장을 표로 설명한 사례



어려운 용어를 그림으로 설명한 사례

- 시행일 2021년 12월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6)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협상계약의 평가순위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차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과도한 물량 감축 등으로 단가를 낮춘 경우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의 60~80% 내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여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산업 제품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보도자료)“조달청, 협상계약 ‘기술’ 평가 강화”(‘21.4.1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 **추진배경** 협상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기술능력평가 순위별로 일정 점수차를 두어 기술능력평가 점수차 확대
 - 덤핑 입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 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신기술·신규업종 제품 구매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여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조달청 조달등록팀 (☎ 042-724-7061)

혁신시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도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가 아닌 입찰·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제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 확인 자체 기준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이에 따라, 영세한 기술개발업체의 혁신시제품 등록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5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 등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 **추진배경** 혁신시제품 등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영세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곤란
-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 하도록 규정 개정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 042-724-7146)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비축원자재 이용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요건 완화 및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 신청 자격요건을 기존 7개 지표 외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하여 확대합니다.

* 신설 4개 지표 포함 총 11개 지표 중 1개 이상 적합 시 신청 가능
- 지정 기업에게는 방출량을 3배 까지 확대하고, 외상·대여 물량에 대한 기본이자를 0.5%p 할인하며, 할인이자 적용기간도 확대(외상 : 6개월→1년, 대여 : 3개월→6개월) 적용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4일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조달청홈페이지>비축물자>공지사항>2021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공고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 제도 개선

- 추진배경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축 원자재 이용 제조기업)
- 주요내용

 - ① 신청요건 완화

 - (기존) 4개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 7개지표
⇒ (개선) 기존+정책연계 확대
 -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G-PASS(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을 신청 대상에 추가
 - ② 지정혜택 확대

 - (기존) 방출량 3배 확대+외상우대
⇒ (개선) 기존 확대(외상조건) + 대여시 우대 추가
 - 외상 수 물량에 대해 기본이자 대비 0.5%p 할인하며, 대여 물량도 이자를 할인(0.5%p) 및 기본이자 적용기간 연장(3月 → 6月) 적용
- 시행일 2021년 5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20. 10. 20. 개정 「도로교통법」)

- ▣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교통안전 교육 의무가 부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7514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 (法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부과(法 제73조 제2항 5호)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2021년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장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합법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21. 1. 12. 개정 「도로교통법」).

- ▣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또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당 주차구역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 하더라도 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해당
- ▣ 하지만,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7891호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주차 허용 확대

- 추진배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法 제34조의2 제1항 2호)

 - 보도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허용 가능
 - 자전거등의 주정차 허용은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
-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032-835-2246)

기존에는 수난구호에 활동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비용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 '단체' 등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수당·실비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구조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처간 정책조정 중심의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민간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가능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여,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새소식·알림>보도자료('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보상이 확대됩니다') ('21.3.29.)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 추진배경 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 구조 활성화(수상구조법 개정)
- 주요내용
 -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대상확대	·사람	·사람+단체+법인 포괄
조례위임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근거) 無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구조에 참여한 사람 ·(지원근거) 조례 위임근거 규정 신설
피해보상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구조 참여한 사람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4)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야 함

▣ 다만,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4.30.)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 **추진배경** 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 방지
- **주요내용**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4)

앞으로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①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②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 (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

** 소규모가맹본부는 2021년 11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을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

☐ 또한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4.30.)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 **추진배경**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
- **주요내용**
 -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044-200-4950)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공정위 소식 > 보도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3.24.)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60일) 도입

-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매입거래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기존) 특약매입·위수탁·임대를 거래: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지급
 - (개선) 직매입 거래 추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044-200-4950)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3.24.)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 (개선)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 <p>*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p>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044-200-4171)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근거, 내용,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착수한 경우 통지대상을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 또한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1.5.20.)

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절차법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강화
-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통지의무 예외 규정
 - * 신고인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대상 기업에게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착수 사실을 조사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통지하고 통지 방법도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
-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70)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 044-205-6458)

온라인(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 그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 이에,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 개선내용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1.5.21.)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 추진배경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해야하는 불편해소
- 주요내용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가능(정부24)
-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시범운영기간 : 5.21.~ 6.20.)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911)

정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소비자포털의 이름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24시간 열린소비자포털)소비자24’로 변경됩니다.

- ‘소비자24’는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으로 95개 부처·기관이 참여하여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으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털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소비자24’로 이름을 바꿔 운영합니다.

참고 ‘소비자24’ 홈페이지 : www.consumer.go.kr

소비자24 소개

- **개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18.5.1.~)
- **근거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
- **주요제공 콘텐츠**
 - ① **비교정보**
 -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정보 제공
 - ② **리콜정보 및 상품정보**
 - 26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리콜·이력·인증·상품 정보 제공
 - ③ **피해구제 신청**
 -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분야별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69개 피해구제기관 안내 및 신청창구 통합 제공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2)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 조사·수사·소송 등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21.4.13.)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책임감면
- **주요내용**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2)

2021년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 및 조사·수사과정에서의 협조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무고, 명예훼손 등 관련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고·징계 취소와 같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21.4.1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주요내용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2)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존) 2년 → (변경)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홍보>보도자료>“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21.4.13.)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지원 및 부패신고자와의 형평성 강화
* 부패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사유>
 - 벌칙 또는 통고 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74)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시작합니다.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원주 위치)는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소·시설·솔루션을 지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플랫폼 및 결합전문기관이 위치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지원 국비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가명정보 활용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가명정보 실습 지원, 서울 송파구 위치)도 기능 개선을 통해 7월부터 가명처리 실무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강원도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21.4.16.)

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74)

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적정성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운영합니다.

-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21.11.)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검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를 위해 공모, 개인정보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반출승인)에 따른 조건
- 또한 보수교육 및 사례 공유·토론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풀의 전문역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출심사위원회의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인 이상의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02-2100-3106)

2021년 11월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크웹 등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 ※ 많은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정정보 유출 발생 시 큰 피해 발생 우려
- ▣ 서비스 이용 후, 편리하게 본인의 계정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계정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21.1.26.)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 추진배경 인터넷상 광범위하게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 ※ 국내 800개 사이트 1천364만 계정정보 다크웹 유출 ‘무더기’ (아이뉴스24, '20.11.6.)
 - ※ 사이버범죄 천국 ‘다크웹’, 국내 개인정보 공유 ‘2,346만건’ 유출 (파이낸셜뉴스, '20.12.8.)
- 주요내용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구축·운영(11월)
 - * 다크웹으로 유출된 개인 계정정보(2,300만 여개)와 사용중인 계정정보를 대조, 변경여부 권고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cay.go.kr) 내 신규 기능으로 서비스 운영
- 시행일 2021년 11월(예정)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제출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분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매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분기→매월 • 가산세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 1%→0.25%, 지연제출: 0.5%→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21.7월~'21.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보도자료) 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p>	<p>소득세법 법인세법 ('21.7.1.)</p> <hr/> <p>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 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p>
<p>소액수의계약 허용기준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수의계약 허용기준 •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0.8억원 •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원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원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수의계약 허용기준 상향 •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1억원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1억원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1억원 <p>※(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p>	<p>국가계약법 시행령 ('21.7월초)</p> <hr/> <p>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서 발급기관 •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 한국해양진흥공사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p>	<p>국가계약법 시행령 (‘21.7월초)</p> <hr/> <p>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p>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 : 7개) • 국제입찰 조달계약 범위 • 부당한 특약 등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 •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최소 기준금액) • 종합공사 : 30억원 • 전문공사 : 3억원 • 기타공사 : 3억원 • 물품계약 : 1.5억원 • 용역계약 :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 : 10개, 3개 추가) • 국제입찰 조달계약 범위 • 부당한 특약 등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 •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 개선계약 정산 관련 사항 • 계약해제·해지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최소 기준금액) • 종합공사 : 10억원 • 전문공사 : 1억원 • 기타공사 : 0.8억원 • 물품계약 : 0.5억원 • 용역계약 : 0.5억원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공공조달개선 보도자료</p>	<p>국가계약법시행령 (‘21.7월초)</p> <hr/> <p>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 (044-215-5643)</p>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p>	<p>■ 주택 재산세 세율</p> <table border="1" data-bbox="309 348 521 563"> <thead> <tr> <th>과표</th> <th>표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0.6억 이하 (공시 1억)</td> <td>0.1%</td> </tr> <tr> <td>0.6~1.5억 (공시 1억~2.5억)</td> <td>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td> </tr> <tr> <td>1.5~3억 (공시 2.5억~5억)</td> <td>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td> </tr> <tr> <td>3억 초과 (공시 5억)</td> <td>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td> </tr> </tbody> </table>	과표	표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6~1.5억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1.5~3억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 (공시 5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547 376 824 591"> <thead> <tr> <th>과표</th> <th>특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0.6억 이하 (공시 1억)</td> <td>0.05%</td> </tr> <tr> <td>0.6~1.5억 (공시 1억~2.5억)</td> <td>3.0만원+0.6억 초과분의 0.1%</td> </tr> <tr> <td>1.5~3억 (공시 2.5억~5억)</td> <td>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td> </tr> <tr> <td>3~3.6억 (공시 5~6억)</td> <td>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td> </tr> </tbody> </table> <p>※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p> <p>※ (주택 수 산정)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p>	과표	특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05%	0.6~1.5억 (공시 1억~2.5억)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3억 (공시 2.5억~5억)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3~3.6억 (공시 5~6억)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p>지방세법 (‘21.1.1.) ※ 재산세 부과는 7·9월</p> <hr/> <p>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0)</p>
	과표	표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6~1.5억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1.5~3억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3억 초과 (공시 5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과표	특례세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05%																						
0.6~1.5억 (공시 1억~2.5억)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1.5~3억 (공시 2.5억~5억)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3~3.6억 (공시 5~6억)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p>주민세 과세체계 개편</p>	<p>■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p> <table border="1" data-bbox="309 992 521 1133"> <tbody> <tr> <td rowspan="3">균등분</td> <td>개인</td> </tr> <tr> <td>개인사업자</td> </tr> <tr> <td>법인</td> </tr> <tr> <td colspan="2">재산분</td> </tr> <tr> <td colspan="2">종업원분</td> </tr> </tbody> </table> <ul data-bbox="309 1166 521 1409"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균등분(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및 재산분을 모두 납부 ※ (균등분)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250원/㎡(사업소 연면적) 재산분은 제한세율로 운영 ※ 250원/㎡ 이하에서 조례로 결정 균등분은 8월, 재산분은 7월 납부 	균등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p>■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p> <table border="1" data-bbox="547 968 824 1050"> <tbody> <tr> <td>개인분</td> </tr> <tr> <td>사업소분</td> </tr> <tr> <td>종업원분</td> </tr> </tbody> </table> <ul data-bbox="547 1067 824 1331"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법인은 5~20만원) + 250원/㎡(사업소 연면적) 사업소분에 탄력세율을 도입 ※ 표준세율 ± 50% 범위내 조례로 결정 사업소분 납기를 8월로 조정, 주민세 납기를 통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p>지방세법 (‘21.1.1.) ※ 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p> <hr/> <p>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2)</p>									
균등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국세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자가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수집하여 연말정산,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제출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하고, 소득(법인)세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2021. 7.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됨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p>☞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p>	<p>법인세법 제75의4 ②, 소득세법 제81의7 ① ('21.7.1.)</p> <hr/> <p>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p>
<p>간이과세제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음식점업, 제조업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자 - 1억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 *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금액(공급대가) × 0.5% 의제매입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취가산세: 공급대가 × 0.5% • 발급가산세: 일반과세자 준용 <p>☞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p>부가가치세법 ('21.7.1.)</p> <hr/> <p>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3)</p>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하는 업자 추가 •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p>☞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p>	<p>관세법 ('21.7.1.)</p> <hr/> <p>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p> <p>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p>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법정 최고금리 인하 (2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 적용 <p>☞ (참고) 금융위원회·법무부홈페이지) 보도자료)'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p>	<p>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21.7.7.)</p> <hr/> <p>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p> <p>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863)</p>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무주택 세대주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0.8억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0.9억원 이하) ② (가격)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혜택) LTV 10%p 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무주택 세대주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원 미만) ② (가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혜택) LTV 최대 20%p 우대(4억원 한도) 등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1.5.31일)</p>	<p>행정지도 선 시행, 추후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21.7.1.)</p> <hr/> <p>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2824)</p>
<p>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단계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차주에 대해서만 차주단위 DSR 적용 •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 확대 • 수도권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 연소득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1.4.29.)</p>	<p>행정지도 선 시행, 추후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21.7.1.)</p> <hr/> <p>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2824)</p>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만기 30년까지만 선택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상품(총한도) 4.1조원(1인당 한도) 7천만원 (보증료) 0.05% ■ 주금공 전세대출은 전세금 5억원 이하 주택만 이용가능 (대출 한도 2.2억원) ■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내 신혼 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상품(총한도) 제한 폐지 (지속공급)(1인당 한도) 1억원(보증료) 0.02% ■ 주금공 전세대출의 이용 가능 전세주택을 전세금 7억원까지 확대(대출 한도는 동일 하게 유지) ■ 보금자리론의 1인당 이용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확대 	<p>주금공 내규개정 등 (’21.3분기)</p> <hr/> <p>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p>
<p>햇살론17 금리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 2.5%p(17.9→15.4→12.9%) ■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 1.0%p(17.9→16.9→15.9→14.9→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 3.0%p(15.9→12.9→9.9%) ■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 △ 1.5%p(15.9→14.4→12.9→11.4→9.9%) 	<p>-</p> <hr/> <p>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p>

금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집단 차원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보도자료</p>	<p>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0.6.30.)</p> <hr/> <p>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02-2100-2593)</p>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송금 이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가능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p>	<p>예금자보호법 (‘21.7.6.)</p> <hr/> <p>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p>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월부터 신용카드사의 대기업 등 대형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됨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p>	<p>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21.7.1.)</p> <hr/> <p>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p>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p>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시,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 <p>☞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7.21.)</p> <hr/> <p>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531, 2859)</p>
<p>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p>☞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허가 (1월 27일)</p>	<p>신용정보법 (21.8.4.)</p> <hr/> <p>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p>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 허용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21.하반기)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한 참여 학생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가입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 배정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 시행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880)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0이내) 허용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 학교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2.3.)</p>	<p>고등교육법 (‘21.6.23.)</p> <hr/> <p>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p>
<p>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이 있어도 학교에서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 ■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p>☞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2.26.)</p>	<p>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1.9.24. 시행 예정)</p> <hr/> <p>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p>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의무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등록·변경시 제출 서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이사회회의록(법인의 경우) - 시설사용증명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등록·변경시 제출 서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 - 이사회회의록(법인의 경우) - 시설사용증명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학원법 시행규칙 (‘21. 하반기 예정)</p> <hr/>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380)</p>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 실시 • 안전 인증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교육시설 73,865개동 - (인증주기) 5년, 10년 주기 - (기준) 3개 안전분야 심사 • 안전성평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학교 내·외 공사 - (기준) 지반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 적정성 및 통학로 안전성 <p>☞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 보도자료)「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 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21.5.12.)</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2.4.)</p> <hr/>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5)</p>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준의 강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 강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클래스,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도입 - 프로젝트 실습과정이 융합된 심화강좌 (K-MOOC+) 시범 도입 -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 제공 	-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6)</p>

교육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p>	<p>■ 해당없음</p>	<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대 교직원의 임명 및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 방송통신대학교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 <p>※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홍보마당(홍보자료) 시행령 제정</p>	<p>방송통신대법 시행령 (‘21.7.13.)</p> <hr/> <p>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21)</p>
<p>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p>	<p>■ 국립대학의 재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임 	<p>■ 국립대학의 재산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임 •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가능 •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p>※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2.26.)</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1.9.24.)</p> <hr/> <p>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p>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의 정보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 의무교육 대상(초·중)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정보연계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한다</p>	<p>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1.9.24.)</p> <hr/> <p>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p>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궁금할 경우 국민 스스로 직접 찾아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차세대 구축사업 보도자료</p>	<p>사회보장급여법 (‘21.9월)</p>
			<p>보건복지부 차세대시스템추진단 (02-6261-2883)</p>
<p>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 (지급액)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한도액 적용 * 한도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확대)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1급~3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1.6.30.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지급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 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연금총액과의 차액을 지급 	<p>국민연금법 (‘21.6.30.)</p> <p>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044-202-3632)</p>
<p>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추가 시범사업 시행</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시행(‘21.8월) <p>☞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p>	<p>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p> <p>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5 (방문요양급여)</p>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p>

보건복지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p>	국민건강증진법 ('21.12.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트라우마센터 1개소,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1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트라우마센터 1개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4개소 설치·운영 • 국립나주(호남권)·부곡(영남권)·춘천(강원권)·공주(충청권)병원 설치 <p>☞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p>	정신건강복지법 ('21.6.3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3)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행 (7.1.) •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1.7.1.)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044-202-792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 제한 없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p>※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7.1.)</p> <hr/> <p>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p>
<p>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최대 52시간제 • 50인 이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최대 52시간제 • 5인 이상 적용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p>	<p>근로기준법 (*21.7.1.)</p> <hr/> <p>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5)</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p>	<p>근로기준법 (’21.11.19.)</p> <hr/> <p>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13)</p>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p>	<p>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1.7.1.)</p> <hr/> <p>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p>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p>	<p>고용보험법 (’21.7.1.)</p> <hr/> <p>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style="color: #00AEEF; font-weight: bold;">개정 노동조합 및노동 관계조정법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 노조 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노조 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 다만, 근로시간 면제해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가입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 노조 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 노조 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교섭 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 의무 부재 •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유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교섭 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p style="font-size: small; color: #00AEEF; margin-top: 10px;">☞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개정 노조법 설명자료</p>	<p>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조사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자치단체·노사 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 -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 재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회의 소집,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심의 및 수립·시행 ■ 종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 • 우수기관·단체 포상·평가 등 	필수업무종사자법 (‘21.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부당하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21.11.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근로기준법 (‘21.1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p>	<p>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p>
<p>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 “체당금”이라는 용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p>임금채권보장법 (‘21.10.14.)</p>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p>	<p>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 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 별정직공무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동조합 설명자료</p>	<p>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p> <hr/> <p>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p>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원직교원)만 노조 가입 허용 •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동조합 설명자료</p>	<p>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p> <hr/> <p>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p>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제4조의2) •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제4조의3)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산업안전 보건법 (‘21.11.19.)</p> <hr/> <p>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507)</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p>	<p>■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산안법 시행령 별표 10)</p>	<p>■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p> <p>* 상향(안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p> <p>*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틀루엔디아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p> <p>■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p> <p>*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p> <p>*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 (1일 5,000 Kg → 1일 50,000 Kg)</p>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p> <p>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p>
<p>산재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확인제도 도입</p>	<p>(신설)</p>	<p>■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p> <p>■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도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p> <p>※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6.9.)</p> <p>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p>

고용노동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련 부서
<p style="color: #00AEEF; font-weight: bold;">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재검사 실시요건) 5가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실시 ■ (재검사 실시요건) 3가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3) 생략 ■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6.1.)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6.8.)</p> <hr/>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p>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 국립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경기도 용인) 1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청소년치료 재활센터(대구시 달성군) 추가 개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7, 6308)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및 검정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3 실험실 신속 및 시험장비 보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 (043-719-5468)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적용대상 품목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류 중 김치(배추김치) ■ 인증요건 및 절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관리점 변경 시 변경인증 필요 ■ 조사·평가 및 제재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 (신청)서 오프라인 발급신청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에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신청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시 제출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원본 우편 송부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 신청과 수입신고로 서로 다른 기관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 온라인 발급신청 ● 신청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온라인 발급신청 ● 원본 우편 송부 불필요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 신청과 수입신고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하나의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p>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18.7.25.)</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1)</p>

질병관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최대장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4. 자가격리 나. 자가격리의 절차 등 2)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장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4. 자가격리 나. 자가격리의 절차 등 2)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장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p>☞(참고) 질병관리청홈페이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5.11.)</p> <hr/> <p>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p>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 완료 및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예시)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이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 완료 • (예시)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신진예술인도 창작 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p>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21.4.1.)</p> <hr/> <p>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p>
		<p>☞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보도자료</p>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 및 역사문화환경 규제 위주 정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 제한 규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 • 역사적 증거 보존, 가치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삶의 자원으로서 질적 삶을 보장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리로 변화 •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 •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p>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1.6.10.)</p> <hr/> <p>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1)</p>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역사문화권정비 제도 전면 시행 보도자료</p>	

문화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해당 보존조치 된 토지만 매입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된 토지만 아니라 그 인접토지까지 매입의 대상 확대 •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토지도 매입의 대상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6.9.)</p> <hr/> <p>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2)</p>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대통령 증서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후 • (인정서)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후 • (인정서)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 수여 • (증서)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p>※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p>	<p>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1.6.23.)</p> <hr/> <p>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지역 우선 시행 ('2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확대 시행 ('21.12월~) 	<p>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21.12.25.)</p> <hr/> <p>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p>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 계획 수립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물관리 비전·목표·정책방향 및 전략 제시 ■ (성격) 물 관련 최상위 계획(하위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심사 필요)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p>	<p>물관리기본법 ('21.6.12.)</p> <hr/> <p>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46)</p>

환경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부과(연 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부과(연 1~2회)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연도의 자가측정을 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1.5.25.)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보도자료>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보도자료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작성·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보 작성·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21.4.13.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1.4.13.)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8)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p>	<p>■ 특정 자격기준 없이 통합허가대행업 영위</p>	<p>■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4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사무실, PC, CAD 등 •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 - 기초 자료 보존 - 등록증이나 명의 대여 금지 - 재대행 금지 등 <p>※ (참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21.1.5.개정)</p>	<p>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7.1.)</p> <hr/> <p>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35)</p>
	<p>수은폐기물 관리제도 시행</p>	<p>■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 검출된 오프류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p> <p>■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인 폐유독 물질로 분류·처리</p>	<p>■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분류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보관·수집·운반 기준) 기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이중 밀폐 포장 • (처리 기준) 수은함유폐기물의 수은은 회수, 회수 수은은 적정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 처리 잔재물은 이중 밀폐 포장하여 매립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의 갱신 • 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 질병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요양급여 지급 효력 발생일 •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의 갱신 •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 • 중대한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질병(악성중피종,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후유증 - 석면질병의 치료 또는 세균감염 등 외적 요인의 결합에 의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의사의 관리 및 치료가 필요 경우 - 폐기능 고도장해 -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 ■ 요양급여 지급 효력 발생일 • 석면질병으로 진단받은 날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15년 이내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p>석면피해구제법 (*21.7.6.)</p> <hr/> <p>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p>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단계 중심의 태풍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전)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 단계부터 진로에 대한 예측정보 제공 - (소멸후)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 후 정보 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발달 전 단계부터, 세력 약화 이후까지 전주기 상세 태풍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전)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 단계부터 진로, 강도, 강풍반경 등 상세 예측정보 제공 - (소멸후) 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 열대저압부로 약화 된 이후에도 예측정보 제공 	<p>(*21.6.1.)</p> <hr/> <p>기상청 국가태풍센터 (070-7850-635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의3(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7조의 4제1항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회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적어 협의기간 내에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30조의3 개정 (*21.6.10.)</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8)</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정보보호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략)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p>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개정 (‘21.12.9.)</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p>
<p>과태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p>정보보호산업법 제41조 개정 (‘21.12.2.)</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p>
<p>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6. (생략)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p>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항 개정 (‘21.12.9.)</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위원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위원을 포함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p>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개정 (‘21.12월 예정)</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 신고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고 전년도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이 없거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는 자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p>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개정 (‘21.12월 예정)</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정보보호지침 준수 권고 대상 확대</p>	<p>■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p>	<p>■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제조·수입자</p> <p>☞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p>	<p>정보통신망법 ('21.12.2.)</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p>
<p>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도의 근거 마련</p>	<p>■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근거 없음</p>	<p>■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5만원~1천만원의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p> <p>☞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반 조성"</p>	<p>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1.12.2.)</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p>
<p>국제통용평가 고시</p>	<p>■ <제정></p>	<p>■ 국제통용평가 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고시</p>	<p>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 ('21.10월 예정)</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p>
<p>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p>	<p>(신 설)</p>	<p>■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법이 새로 시행</p> <p>•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p> <p>•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 지원 가능</p> <p>•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 강화</p> <p>•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경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p>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전문</p>	<p>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21.10.21.)</p> <hr/>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044-202-4512)</p>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PPA (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규정하고, 전기신사업(자) 종류에 포함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법령)전기사업법</p>	<p>전기사업법 (‘21.10월 예정)</p> <hr/> <p>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5172)</p>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절차 마련 (산업집적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절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 추진 절차 마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부장관의 육성지침을 수립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촉진사업계획 수립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17598호)</p>	<p>산업집적법 (‘20.12.8.)</p> <hr/> <p>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7)</p>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정의 및 제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제한대상)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정의 및 제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수급인이 다른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제한대상)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자에게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법령)전기공사사업법</p>	<p>전기공사사업법 (‘21.4.20.)</p> <hr/> <p>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152)</p>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및 지원절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및 지원절차 규정 •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를 등을 고려해,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포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등 • 법에서 위임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 (SOC, 교육, 주택건설 등) 구체화 • 관련 사업 공모 시 일정부분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보도자료)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다</p>	<p>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1.6.9.)</p> <hr/> <p>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p> <p>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p>
<p>석유 수급정보 비밀유지 예외규정 신설 및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사업법상 석유 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부재 및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수급정보 활용 제고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 • (비밀유지의무 예외) 「석유사업법」 제38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국세의 부과·징수, 조세징수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석유사업법」 제4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p>☞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법령)석유사업법</p>	<p>석유사업법 (’21.4.21.)</p> <hr/> <p>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4)</p>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 가입대상 : (현행) 중소기업 → (변경) 현행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예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평균 매출액 6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p>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1.10.21.)</p> <hr/> <p>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4465)</p>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irtual SGBC)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진출 및 현지 정착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 현지 기업 및 기관과 B2B 매칭 정보 제공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유럽시장 수요조사 현지법인화 행정절차 및 사무 공간 관련 정보 안내 	<p>’20년 12월, 한국 중소기업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의 MOU 체결 (’21.5.18.)</p> <hr/> <p>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과 (042-481-6805)</p>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 (생산능력 한도내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생산능력 한도 내 손해배상 +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은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가 배상) <p>☞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보도자료</p>	<p>상표법 (’21.6.23.)</p> <p>디자인보호법 (’21.6.23.)</p> <p>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6.23.)</p> <p>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p>
<p>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보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음 <p>☞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중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 재산으로 보호 받는다」보도자료</p>	<p>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21.)</p> <p>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p>
<p>연차(갱신)등록 안내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등록)권자에게 연차(갱신) 등록 안내서를 우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등록)권자 중 개인에게 연차(갱신) 등록 안내서를 모바일 발송으로 전환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담, 법인권리자이거나 모바일 안내서를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개인권리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 	<p>’21.10월 중</p> <p>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092)</p>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광고) 지상파방송은 금지, 유료방송은 허용 • 중간광고 시작 직전 고지의무만 규정 ■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지상파방송-유료방송 간 차등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광고) 방송매체 구분 없이 허용 • 중간광고가 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및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분리편성광고는 중간광고와 시간·횟수 통합기준 적용 ■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 규제 적용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방송시장 낮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한다' 	<p>방송법 시행령 (‘21.7.1.)</p> <hr/> <p>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1)</p>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임차인 자발적 신청 ** 수수료 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신고 ① 임대차신고→확정일자부여 * 임대인,임차인 의무신고 ** 수수료 무료 ☞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p>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1.6.1.)</p> <hr/> <p>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4175)</p>
<p>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시범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수하물 보호 • (원칙) 승객으로부터 접수된 위탁수하물은 도착지에서 승객에게만 전달 가능 • (예외)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수하물 보호 • (원칙) 승객으로부터 접수된 위탁수하물은 도착지에서 승객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인가받은 짐 배송대행업체에게 전달 가능 • (예외) 해당사항 없음 ☞ (참고) 국토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공항 짐배송 대행서비스 개시 (*21.7월, 보도자료 배포 예정) 	<p>국가항공보안계획 (내부지침) (*21.3.22.)</p> <hr/> <p>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p>
<p>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기업이 드론 비행시험 등을 위해서는 지방 전용비행시험장* 을 이용 *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 비행시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은 드론 기체개발 등을 위한 비행시험을 위해 화성, 인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이용 가능 	<p>(*21.11.1.)</p> <hr/> <p>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26)</p>

국토교통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항공안전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이 시작됩니다.</p>	<p>■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 등 개별 데이터 분석 관리</p>	<p>■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적 연계분석을 통해 안전정보를 생산하여 정부와 항공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관리성과 제고</p>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운영</p>	<p>항공안전법 제61조의2 ('19.8.27.)</p> <hr/> <p>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9)</p>
<p>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p>	<p>(신설)</p>	<p>■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우수사업자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 심사 • 인증 사업자에게는 행정·재정적지원, 인증표시, 단체설립 등 혜택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설명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p>	<p>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21.7.27.)</p> <hr/> <p>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8)</p>
<p>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p>	<p>(신설)</p>	<p>■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법인 자본금 8억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2억)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 영업점(5개 이상 사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 화물 분류시설 37개소 이상(3천m²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p>☞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설명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p>	<p>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21.7.27.)</p> <hr/> <p>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4)</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착수할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스마트팜 혁신밸리 검색 (원공시점에 배포예정) 	<p>('21. 하반기)</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7)</p>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p>수의사법 ('21.8.28.)</p> <hr/> <p>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p>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개선을 위한 '온라인교육시스템' 전면 재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에 치중하여 일부 교육 과정만 온라인교육이 가능, 동시 수강 인원 제한 • 신규교육은 24시간 중 6시간만 온라인 수강 • 온라인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생 별도 관리 • 활자 위주의 교육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교육과정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해지고, 온라인교육 수강 접근이 편리 • 신규교육도 전체 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 • 축산업허가정보(세울행정시스템)와 연계하여 교육생 관리 • 동영상자료 확대, 교재 분권화 등으로 교육효과 증대 ※ ('21.9월) 교육시스템 재구축 → ('21.10월) 시스템 운영 	<p>축산법</p> <hr/> <p>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9)</p>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농어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p>	<p>■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② (생략) <신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6조(피보험자) (생략) <신설></p>	<p>■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p> <p>■ 제6조(피보험자)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p> <p>☞ (참고) ①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 관보보기(일자별)제20022호 ('21.6.15.) ② NH농협생명 홈페이지) 회사소개)보도자료)농어업인안전보험 상품출시 보도자료 (상품출시 시점에 배포예정)</p>	<p>농어업인안전보험법 ('21.6.15.)</p> <p>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p>
	<p>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p>	<p>■ 공정규격 준수 대상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p> <p>■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p> <p>■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 • 농촌진흥청장</p>	<p>■ 공정규격 준수 대상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p> <p>■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p> <p>■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 •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p> <p>☞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21.8월 예정)</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 스마트 스튜디오만 운영(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권역 2곳(전남, 경북)에 추가 설치운영(총 3개소)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예산둘러보기> 2021예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년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 	<p>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16.6.23.)</p> <p>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85)</p>
<p>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식품안전사항 문구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포장재 겉면에 7종류의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여야 함 ① "표준규격품"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 등의 명칭 및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포장재 겉면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를 포함한 8종류의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여야 함 ① "표준규격품"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 등의 명칭 및 전화번호 ⑧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21.8월) 	<p>농산물 표준규격 (농관원 고시 제2020-16호) (*21.10.14.)</p> <p>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14)</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선박) 미주항로에 월 평균 2척 투입 ■ (중소화주 물량배정) 임시선박 선복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선박)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투입하여 선복량 확대 ■ (중소화주 물량배정) 임시선박 선복의 약 60%를 중소·중견기업 물량 적재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5)</p>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 대응 위원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폐기물관리법 (*21.10.14.)</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3)</p>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수출입 기준 등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복귀기업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에 포함 및 우선입주 허용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21.6.9.)</p>	<p style="text-align: center;">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1.6.9.)</p> <p style="text-align: center;">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p>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해외 온라인물 내 K-씨푸드 판매 전용관 개소</p>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온라인 K-씨푸드 판매 전용관 개설 • (‘21) 5개소 : 중국(타오바오), 미국(아마존, H-프레스), 태국(쇼피), 싱가포르(쇼피)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산업체 전용관 입점 지원 및 판촉* 추진 * 배너광고, 사은품 증정 및 인플루언서·SNS 연계 홍보, 라이브 방송 판매 추진 	<p>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2.19.)</p> <p>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3-4)</p>
<p>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확충 (URL) www.k-seafoodtrade.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구축 • 해외 수산무역지원센터 연락처 및 이메일을 통한 수출상담 •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여 수출업체의 수출상품만 온라인 상품전시관을 통해 상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확충 • 연중 상시 온라인 수출상담 • 온라인 상품 전시관을 통해 수출상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이용 가능 	<p>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2.19.)</p> <p>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3-4)</p>
<p>선원 상병보상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상병 보상 지급 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된 상병보상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만큼 지급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p>	<p>선원법 (‘21.5.21. 본회의 통과, 공포즉시 시행)</p> <p>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p>

해양수산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 설비) 잠정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에 적용 가능한 검사기준 부재 •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동 설비의 실제선박 적용 불가능 및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 잠정기준 마련 • (규정내용) 동 설비 관련 주요 정의 및 설치·시험·안전에 위한 요건 등 • (활용방안) 비공식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선박 적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 안전성을 검증하여 공식기준 마련에 활용 가능 <p>☞ (참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0.1.1. 시행)</p> <p>☞ (참고)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20.7.22. 시행)</p>	<p>친환경선박법 ('20.1.1.)</p> <hr/> <p>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p>
	로컬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 추진 • 공급자 : 보령수협, 서천군수협 • 로컬푸드 매장 : 세종 로컬푸드 (2개 지점), 파머스161, 품앗이 마을(5개 지점), 행복한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으로 확대 • 공급자 :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 로컬푸드 매장 :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p>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어·귀촌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 • (귀어귀촌 종합센터) 귀어귀촌 교육, 정책, 홍보 정보 • (수협) 정책자금 지원 • (워크넷, 수협) 일자리 정보 • (지자체) 귀어인 현황, 지역의 사업현황 • (KOMSA) 어선거래 시스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어·귀촌 정보 종합제공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 한번에 확인 가능 <p>☞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귀어귀촌정보종합제공 플랫폼 보도자료(예정)</p>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특별진급 가능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21.10.14.)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 사이에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21.10.14.)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7171)
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금리(5% 수준)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금리(5% 수준) + 국가재원(1%) 가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병역법 ('21.10.14.)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1)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예비군이 민간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예비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은 물론 민간의료시설을 포함하여 원하는 곳에서 치료 가능 	예비군법 ('21.10.14.)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일 전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 활용, 입영판정검사 실시 ■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실시 예정 	병역법 제14조의3조 ('21.8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운영 •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 • 서울 + 대구, 광주, 대전 	제도개선
			현역모집과 (042-481-2722)
보충역의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역종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병역처분 변경 	병역법 제65조 ('21.10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p>	<p>■ 악성 혈액질환 5개 질병에 대하여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처분</p>	<p>■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처분 대상에 3개 질병 확대 * 3개 질병 추가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이즈바이러스, 랑게르한스 조직구증</p>	<p>병역법시행령 제134조 (*21.10월)</p>
			<p>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p>
<p>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등 연기</p>	<p>(신 설)</p>	<p>■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연기</p>	<p>병역법 제61조 (*21.7.14.)</p>
			<p>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p>
<p>'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p>	<p>■ 육군 9개 특기 색약자 지원 불가</p>	<p>■ 육군 9개 특기 색약자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행정병 : 5개 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 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정보체계 운용정비 • 전문특기병 : 4개 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 분석연구보조 	<p>제도개선</p>
			<p>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p>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실시 • 육군,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실시 • 육군, 공군 • 해군, 해병대 	<p style="text-align: center;">제도개선</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p>
해병대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병대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 가능 • 동반입대병 : 일반 계열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 전 계열 	<p style="text-align: center;">제도개선</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p>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 (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복무기간 내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 연장 시 국외여행허가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편입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 (24시간) 미충족하거나 허위실적 제출자는 경고, 고발, 편입취소, 재편입 제한 •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 미충족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실적 제출 시 경고 * 위 경우 미충족·허위 공익복무시간을 2배 연장 • 분기별 미충족자 4회 이상 경고시 고발, 허위 실적 제출자는 경고 처분 즉시 고발 • 형 선고 시 편입취소 및 재편입 제한 <p style="margin-top: 10px;">☞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21.4.13.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병역법 (‘21.10.14.)</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p>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 배정제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6개월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는 다음 해 1년간 배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 배정 제한 등) •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는 다음 해 1년간 배정 제한 	<p>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1.7.1.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p> <hr/> <p>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p>
<p>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 공직자 본인 • 18세 이상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 공직자 본인 •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함) • 18세 이상 직계비속 	<p>병역공개법 (‘21.10.14.)</p> <hr/> <p>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6)</p>

방위사업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에서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진흥회로부터 보증사업본부를 독립적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이행보증 이외 공제(보험), 용자, 연구·교육 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원 회원사에 제공 예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방위사업청 방위산업발전TF (02-2079-6456)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성능이 입증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21.05.21.) 방위사업관리규정 (*21.6월 예정)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5)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협력업체의 책임 구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체계업체에 지체상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산물자 기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발생시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책임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만 납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정 훈령) (*21.7월 예정)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6)
물품 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적격심사 기준 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 추가 제재 없음 * 단, 불공정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기준은 현행유지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정 예규) (*21.7월 예정)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7)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감독대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이 수사를 담당 ● 전자감독대상자가 범한 모든 범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포함)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이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외출 제한 위반과 같은 준수사항 위반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해 전자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소속 전문 수사요원이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제6항 신설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반사법경찰이 수사 <p>☞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p>	<p>사법경찰직무법 (‘21.6.9.)</p> <hr/> <p>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95)</p>
<p>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방안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 (예외)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p>☞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뉴스·공지)홍보자료)미디어자료)“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p>	<p>해당 없음</p> <hr/> <p>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1)</p>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부·국토부·지자체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 • 지자체의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시민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CCTV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 사업 실시 •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발생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 일정 거리 내에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 가능 • '21년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실시 후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p>☞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보도자료)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p>	<p>해당 없음</p> <hr/> <p>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723)</p>
<p>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신설 • 제59조의 15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59조의 15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p>장애인복지법 (‘21.6.30.)</p> <hr/> <p>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51)</p> <p>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2)</p>

법무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장애인차별 시정명령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p>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p> <p>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p>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안전 교육사업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안전교육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 안전교육 기획제공 	<p>어린이안전법 시행 (‘20.11.27.)</p> <p>안전교육사업 추진 (‘21.7.~12.)</p> <hr/> <p>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1)</p>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민원처리 기관 등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가능 ※ 「전자정부법」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민원인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 가능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디서나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 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 제출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이용하여 사진을 사전 등록 가능

행정안전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원의 평면적 주소체계 • 지표면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 부여 ■ 건물이 아닌 다중 이용 시설물의 경우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 부재 • 인근 건물의 주소나 건물명칭 임의 사용 ■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 도로명 주소가 없어 주소 사용 불가 ■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해당기관 방문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의 입체적 주소체계로 확대 • 입체·복합도시 등장에 따라, 고가·지하도로, 구조물 내부도로 등에도 도로명 부여 ■ 다중 이용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부착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 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놀음쉼터, 소공원, 어린이 공원 등 ■ 행정구역 결정 전이라도 해당 지역의 입주기업 등이 도로명주소 신청 가능 ■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시 별도의 신청없이 공부(19종) 담당기관에서 자체 주소 변경 ※ (19종)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상, 건축물대장, 측량업등록부, 부동산중개 사무소등록대장, 농지원부, 법인등기부, 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병적기록부,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영업허가 관리대장, 성보호 공개정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광고 사업등록 사항,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 	<p>도로명주소법 (‘21.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 • (소유자)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임차인)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또는 직접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 • (소유자) 직접 신청 가능 • (임차인) 현행 동일 	<p>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44-205-3553)</p>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의무설치 및 인증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제도 • 민방위 경보전파대상 건축물에 수동으로 경보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1월부터 수동으로 경보전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 • (의무사항)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를 위해 경보단말장비 설치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도 도입 • (목적) 건축물 경보단말장비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 • (절차) 행안부에서 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 공표 및 인증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단말장비 제조사가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 시험 후 인증서 발 	<p>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044-205-4383)</p>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無 ■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근거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제15조의2 신설)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 (제25조의2 신설)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9.24.)</p> <hr/> <p>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p>
<p>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카카오톡, (2차)우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카카오톡 (1차) 미열람자 대상 우편 (2차)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카카오톡, (2차) 네이버, (3차) 우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카카오톡(1차) 미열람자 대상 네이버(2차) 송부하고, 네이버(2차) 미열람자 대상 우편(3차) 송부 	<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p> <hr/> <p>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6)</p>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 없음 ■ 재발방지대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 고충담당자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 :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사건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 제출 ■ 필요 시, 사건발생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사정이나 보완 요구 가능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과(미이행시 과태료)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12.9.)</p>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 현장점검, 사정요구 등 관리 강화,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책임 강화('21.3.24.)</p>	<p>성폭력방지법 (‘21.7.13.)</p> <p>양성평등기본법 (‘21.10.21.)</p> <hr/> <p>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2, 6395)</p>
	<p>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21.1.5.)</p>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 상물 삭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요청권한 : 피해자 및 가족*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삭제지원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요청권한 : 피해자 및 가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법제7조의3제2항 개정) ■ 수사기관의 요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삭제지원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법제7조의3제3항 신설) <p>☞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확대</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7.13.)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02-2100-6163)

법제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허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p>☞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p>	행정기본법 제29조 (*21.9.24.)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044-200-6737)

법제처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규정은 개별 공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공공기관 규정을 통합하여 제공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소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DB로 구축 공공기관의 소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검색·확인 가능 <p>☞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p>	<p>「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10.)</p> <p>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p>
<p>법령을 알기 쉽게 시각콘텐츠로 제공</p>	 	 	<p>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5)</p>

조달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차등점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 및 정성 평가 점수 합계로 기술능력평가점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능력평가의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기술평가 순위 1순위를 배정한다 부여 후, 차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 부여 선순위와 후순위의 원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 원점수 차이 유지 	<p>「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1.4.12. 개정, ’21.7.1. 시행)</p>
원가절감의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가격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60~80% 내에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기준금액을 공고하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원가절감의 적정성 검토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실적 제외 사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제외 (예외)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실적 제외 사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 안전·보안·안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6)</p>
기술보유 혁신 중소기업의 입찰등록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생산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일반제품 제조로 등록 가능 * 공정등록증명서, 직접생산 확인 자체 기준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p>「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경 등록규정」 (’21.6.1. 시행)</p> <p>조달청 조달등록팀 (042-724-7061)</p>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신청요건 완화 및 지정혜택 확대</p>	<p>■ (신청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기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자리</td> <td>①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td> </tr> <tr> <td>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부)</td> </tr> <tr> <td rowspan="2">기술 투자</td> <td>③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td> </tr> <tr> <td>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기부)</td> </tr> <tr> <td rowspan="2">수출 유망</td> <td>⑤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td> </tr> <tr> <td>⑥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 (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td> </tr> <tr> <td>산업 영향력</td> <td>⑦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td> </tr> </tbody> </table> <p>■ (지정혜택)</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기존</th> </tr> </thead> <tbody> <tr> <td>방출량</td> <td>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td> </tr> <tr> <td rowspan="2">외상 우대</td> <td>① 방출 확대물량에 대해 이자 0.2%p할인</td> </tr> <tr> <td>② 외상기본이자를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기본 6개월 + 6개월)</td> </tr> </tbody> </table>	분야	기존	일자리	①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	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부)	기술 투자	③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기부)	수출 유망	⑤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	⑥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 (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산업 영향력	⑦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분야	기존	방출량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	외상 우대	① 방출 확대물량에 대해 이자 0.2%p할인	② 외상기본이자를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기본 6개월 + 6개월)	<p>■ (신청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자리</td> <td>①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td> </tr> <tr> <td>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td> </tr> <tr> <td rowspan="2">기술 투자</td> <td>③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방자치단체)</td> </tr> <tr> <td>④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 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td> </tr> <tr> <td rowspan="3">수출 유망</td> <td>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td> </tr> <tr> <td>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td> </tr> <tr> <td>⑦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td> </tr> <tr> <td rowspan="4">산업 영향력</td> <td>⑧ G-PASS 기업(조달청)</td> </tr> <tr> <td>⑨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td> </tr> <tr> <td>⑩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td> </tr> <tr> <td>⑪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 기업(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중기부)</td> </tr> </tbody> </table> <p>■ (지정혜택)</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개선</th> </tr> </thead> <tbody> <tr> <td>방출량</td> <td>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td> </tr> <tr> <td rowspan="2">외상 우대</td> <td>① 외상 전체 물량에 대해 이자 0.5%p 할인</td> </tr> <tr> <td>② 외상기본이자를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기본 6개월 + 6개월)</td> </tr> <tr> <td rowspan="2">대여 우대</td> <td>① 대여물량에 대해 이자 0.5%p할인</td> </tr> <tr> <td>② 기본이자를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본 3개월 + 3개월)</td> </tr> </tbody> </table>	분야	개선	일자리	①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	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기술 투자	③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방자치단체)	④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 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수출 유망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	⑦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산업 영향력	⑧ G-PASS 기업(조달청)	⑨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⑩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⑪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 기업(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중기부)	분야	개선	방출량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	외상 우대	① 외상 전체 물량에 대해 이자 0.5%p 할인	② 외상기본이자를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기본 6개월 + 6개월)	대여 우대	① 대여물량에 대해 이자 0.5%p할인	② 기본이자를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본 3개월 + 3개월)	<p>「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20.12.15. 개정)</p> <p>강소기업 지정 제도개선 (*21.5.24. 시행)</p> <p>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42-724-7146)</p>
	분야	기존																																																
	일자리	①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																																																
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부)																																																		
기술 투자	③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기부)																																																	
수출 유망	⑤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																																																	
	⑥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 (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산업 영향력	⑦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분야	기존																																																	
방출량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																																																	
외상 우대	① 방출 확대물량에 대해 이자 0.2%p할인																																																	
	② 외상기본이자를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기본 6개월 + 6개월)																																																	
분야	개선																																																	
일자리	① 최근 1년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																																																	
	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기술 투자	③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방자치단체)																																																	
	④ 최근 1년간 신청업체의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이 해당업종의 연구 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 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수출 유망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700만불 이상																																																	
	⑦ 최근 3년 평균 수출실적(금액)이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산업 영향력	⑧ G-PASS 기업(조달청)																																																	
	⑨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⑩ 최근 1년간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수가 90개 이상인 경우																																																	
	⑪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 기업(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중기부)																																																	
분야	개선																																																	
방출량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																																																	
외상 우대	① 외상 전체 물량에 대해 이자 0.5%p 할인																																																	
	② 외상기본이자를 적용기간 6개월 연장 (기본 6개월 + 6개월)																																																	
대여 우대	① 대여물량에 대해 이자 0.5%p할인																																																	
	② 기본이자를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본 3개월 + 3개월)																																																	

경찰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안전 규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만 주정차 금지 ■ 교통사고 운전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원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 • (예외)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가능 ■ 교통사고 운전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운전면허 발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부과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법>연혁>법을 제17514호</p>	<p>도로교통법 (‘21.10.21.)</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p>
<p>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주차 허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주차 허용 •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는 주차허용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주차 허용 •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시정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주차 또는 주차 허용 가능 	<p>도로교통법 (‘21.7.13.)</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p>

해양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난구조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 수당·실비 지급대상이 사람(개인)으로 한정 •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만 보상 • 지자체장이 비용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국한(위임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 참여자 지원 확대 • 수당·실비 지급대상이 사람(개인)에서 법인, 단체 등까지 확대 •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 외 수난구조 참여자도 보상 • 지자체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외 수난구조 참여자에게도 비용 지원 가능(조례위임) 	수상구조법 (‘21.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 • 수색구조 관련부처 공무원 위주의 정책조정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 수색구조 관련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 위주의 자문위원회 <p>☞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년 보도자료(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보상이 확대됩니다)</p>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246)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도, 가맹점 모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 후 허 가맹점 모집 가능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를 면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11.19.)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 보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적용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함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 보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11.19.)</p> <hr/> <p>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p>
<p>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60일)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물 거래)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매입 거래시 대금 지급기한(60일) 도입 • (직매입 거래)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 •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물 거래)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 보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10.21.)</p> <hr/> <p>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p>
<p>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판매수탁자도 포함하도록 확대 •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 보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10.21.)</p> <hr/> <p>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공정위 사건 착수사실 및 조사결과 통지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에게 통지 • 다만, 종결처리, 조사종지, 해당 기업이 해산, 폐업 등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함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착수되면 조사대상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통지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통지하지 아니함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피조사인에게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사유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 착수사실 통지 대상을 조사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 • 통지 방법도 서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개정 사건 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p>	<p>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1.5.20.)</p> <hr/> <p>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71)</p>
<p>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함 • 신고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고증 수령은 지자체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 ① 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 (위택스/이텍스),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가능 (정부24)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보도)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p>	<p>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1.5.21.) ※시범운영 기간: 5.21~6.20</p> <hr/> <p>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70)</p> <p>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044-205-6458)</p>
<p>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로그인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24 • (로그인이미지)  <p>☞ (참고) '소비자24' 홈페이지 : www.consumer.go.kr</p>	<p>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 (‘18.5.1.)</p> <hr/> <p>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911)</p>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책임감면 • 국민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가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책임감면 • 국민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가 있을 때 •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인정할 때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보도자료) "입시비라·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p>	공익신고자 보호법 (*21.10.2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징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금 지급사유 • 원상회복 관련 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보도자료) "입시비라·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p>	공익신고자 보호법 (*21.10.2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기한 2년→3년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p>☞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보도자료) "입시비라·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p>	공익신고자 보호법 (*21.10.2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실습 지원센터 운영 (데이터활용 지원허브) • (대상) 누구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처리 실습 가능한 공간, 시설, 장비 등 지원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송파구 위치, 수도권 인근에서 접근용이 - 샘플 데이터셋을 활용한 가명처리 실습 체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처리의 실습과 실무를 동시에 지원하는 센터 운영 • (대상) 누구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처리 실습 및 실무 가능한 공간, 시설,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연계 •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기존 실습시설 개선하여 실무처리 지원까지 가능 - (강원도) 지역에서도 가명정보 활용 지원 가능 - 실무 데이터의 결합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교육,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결합연계까지 전 과정 지원 가능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강원도에 처음으로 설치된다”</p>	<p>해당없음</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4)</p>
<p>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처리 결과 검증 및 가명정보 결합 반출 심사를 위한 전문가 부족 • 특히 재정·기술·인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가명정보 활용에 소극적 ※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로서 식별의 위험성 예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처리 결과 검증 및 가명정보 결합 반출 심사를 위한 전문가 지원 • 전문성이 검증된 풀의 확보로 기관에서 요청시 제공 가능 • 기관에서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가들 간 최신 동향 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개선점 도출 등으로 안정적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에 기여 	<p>「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20.9.1.)</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4)</p>
<p>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크웹 등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 - 많은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정정보 유출 발생 시 큰 피해 발생 우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하게 본인의 계정정보 유출사실 확인 - 이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계정정보 불법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조치가 가능 <p>☞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p>	<p>해당없음</p> <hr/>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06)</p>

